
손해보험

핵심요약

■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출제문항

| 구분 | 내용 | 출 제 문항수 | 구분 | 내용 | 출 제 문항수 |
|--------|-------------------|---------|------|----------|---------|
| 민법·제외법 | 모집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규범 | 4문항 | 손해보험 | 화재보험 | 3문항 |
| | 손해보험 기초 이론 | 2문항 | | 특종보험 | 2문항 |
| |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2문항 | | 장기손해보험 | 4문항 |
| | | 연금저축 | | 2문항 | |
| | | | | 퇴직연금 | 1문항 |
| | | | | 자동차보험 | 5문항 |
| 구제법 |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 4문항 | 제3보험 | 제3보험의 개요 | 5문항 |
| |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 | 4문항 | | 상해보험 | 8문항 |
| | | | | 질병보험 | 3문항 |
| | | | | 간병보험 | 1문항 |

| | | | |
|---------|----------|-----------------------|-----|
| P A R T | 1 | 보험이론·윤리 | |
| | | 01. 모집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규범 | 6 |
| | | 02. 손해보험 기초 이론 | 13 |
| | | 03.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18 |
| <hr/> | | | |
| P A R T | 2 | 보험법규 | |
| | | 01.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 24 |
| | | 02.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 | 41 |
| <hr/> | | | |
| P A R T | 3 | 손해보험 | |
| | | 01. 화재보험의 이해 | 49 |
| | | 02. 특종보험의 이해 | 59 |
| | | 03.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 64 |
| | | 04. 연금저축보험의 이해 | 69 |
| | | 05. 퇴직연금의 이해 | 71 |
| | | 06. 자동차보험의 이해 | 73 |
| <hr/> | | | |
| P A R T | 4 | 제3보험 | |
| | | 01. 제3보험의 개요 | 90 |
| | | 02. 상해보험의 이해 | 92 |
| | | 03. 질병보험의 이해 | 98 |
| | | 04. 간병보험의 이해 | 103 |
| <hr/> | | | |

2 0 2 4 · 손 해 보 험 연 수 교 재

P · A · R · T



보험이론·윤리

01. 모집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규범
02. 손해보험 기초 이론
03.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I. 모집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규범 (4문항)

- 보험산업 : 공공적 기능(국민의 생활안정 보장) + 건전한 육성 +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 국가의 엄격한 감독요구(1962년 보험업법 제정)

1. 보험모집의 정의

- 1) 모집이란?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 2)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란?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 주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가 수행함)
 ⇨ 제3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것으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 않음**
- 3) 보험계약체결의 대리란?
 ⇨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주로 보험대리점이 수행함)
 ⇨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함**
주의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자이다. ⊗

2.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1) 범위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 구 분 | 계약체결권 | 고지의무수령권 | 보험료수령권 | 등록기관 (금융위원회 등록) |
|-------|-------|---------|--------|--------------------|
| 보험설계사 | × | × | × | 보험협회 위탁 |
| 보험대리점 | ○ | ○ | ○ | 보험협회 위탁 |
| 보험중개사 | × | × | × | 금융감독원 위탁 |

- ※ 보험대리점만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모두 있음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는 無)

3. 보험설계사

1) 정의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금융위원회 등록(손보협회 위탁)

2) 보험설계사의 분류

- ① 영위종목별 분류 :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 **주의** 교차모집설계사 ⊗
- ② 유형별 분류 : 전속보험설계사(1개 보험회사 상품만 판매) 교차모집설계사(원소속사 외에 다른 업종 1개의 보험회사 상품 판매 가능)

3) 보험설계사 등록요건

- ① 연수과정 이수(자격시험합격 + 등록교육)
[유효기간 : 연수과정 이수 후 1년]
- ② 보험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 자로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경력 / 유효기간 : 교육 이수 후 1년]

4) 등록 제한사유(금융업의 기본은 신용)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복권되면 기간 상관없이 바로 가능)
주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하면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
- ③ 보험업법 및 금소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미경과자
- ④ 보험업법 및 금소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미경과자
- ⑥ 등록취소 2회 이상 받은 자, 모집관련 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 미경과자
TIP 벌금, 과태료, 과징금 2년, 유용 3년

5) 보험설계사 말소 : 타보험사로 이직하거나 모집을 그만둘 때 말소한다.

주의 위촉계약 종료(해촉)시 이직이 가능하다. ⊗

※ 본인의 직접 말소시 제출서류 ⇨ 해촉증명서(보험회사 발행) 또는 내용증명우편(발송 후 10일 경과) 원본, 신분증

참조 직접말소시 필요서류가 아닌 것은?

⇒ 보험설계사 등록증 원본 ⊗

주의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되면 자동말소된다. ⊗

주의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타보험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 ⊗

6) 등록·말소 관련 용어

- ① 위촉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가 계약하는 것
 - ② 등록 :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보험협회 위탁)에 등록하는 것
 - ③ 해촉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것
 - ④ 말소 : 보험협회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는 것
(보험회사를 통한 말소 또는 직접 말소 가능)
- ※ 위촉 ⇔ 해촉 : “설계사” 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관계
 ※ 등록 ⇔ 말소 : “설계사” 와 “보험협회” 간의 관계

4.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개념

- 1) 손보(생보) 소속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생명(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하여 소속된 손보 이외의 1개의 다른 업종인 생보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일사전속주의 예외제도)
- 2) 등록가능 : A생명(손해)보험회사 설계사가 Z손해(생명)보험회사 설계사로 등록하는 경우
[대리점소속설계사 ⊗, 손해↔손해 ⊗, 생명↔생명 ⊗, 생명←손해 ⊙]
- 3) 등록요건, 등록 및 말소절차 등은 보험설계사와 동일하게 적용
주의 교차모집설계사는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없다. ⊗
- 4) 손해(생명)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는 것도 해당된다. **주의** 해당되지 않는다. ⊗
주의 방카슈랑스 제도와 함께 2003년 8월에 도입되었다. ⊗

5. 보험대리점

- 정의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 보험대리점은 일사전속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체결을 통해 보험모집 가능함(생명, 손해보험 겸업 가능)

- 영위종목별 : 생명, 손해, 간단손해, 제3보험
 - ※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정의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을 통한 재화·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상품의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
- 유형별 : 전속, 비전속(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계약체결한 대리점)
 - 주의 전속대리점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회사 수는 제한이 없음 ⊗
- 영위업종별 : 전업, 겸업(생·손보 다수와 계약체결 가능함)
 - TIP 출제빈도 높은 문제로 업종의 업으로 기억
- 운영주체별 : 개인(소속 설계사 둘 수 있음), 법인

1) 등록요건

- ① 개인보험대리점 : 연수과정(자격시험, 등록교육) 이수
 - [유효기간 :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
 - 또는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등록 교육 이수
 -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 2년 이상 경력]
- ② 법인보험대리점 : 개인대리점 등록요건 충족자 1명 이상 보유
 - ⇒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 :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 ⇒ 감사는 모집을 할 수 없고 유자격자가 아니어도 됨
- ③ 간단손해보험대리점
 - ⇒ 개인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 [유효기간 2년, 자격시험 면제]
 - ⇒ 법인보험대리점 :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 주의 보험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손해보험대리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2) 등록 제한사유 - 불공정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 ① 보험설계사 등록 제한사유 해당자
- ②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③ 다른 보험회사 임직원
- ④ 불공정 모집행위 우려자 [국가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다단계판매업자, 자동차제조업자, 자동차판매업자] TIP 단, 중고차(수입차)판매업자는 등록 가능

- ⑤ 자기계약 대리점으로 운영하려는 자(자기계약 50/100 초과)
- ⑥ 금융감독원장, 보험회사로부터 정직 이상 처분 후 2년 미경과자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②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중고차 판매업자 - 중고차, 수입차 판매업자는 등록가능
- ④ 다단계판매업자

3) 영업보증금

- ①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 예탁 : 예탁없이 영업개시 불가
- ② 영업보증금 규모 :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정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예탁의무 면제

4) 개인대리점의 직접 업무폐지시 증빙서류

- 주의 개인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업무폐지 가능하다. ⊗
- ※ 증빙서류 : 업무폐지동의서(계약체결 보험회사 전부), 신분증, 대리점등록증
원본 또는 분실사유서(보험회사 대표이사 직인 날인)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①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경영여신업자 제외]
- 주의 공제조합 ⊗, 한국은행 ⊗, 보험회사 ⊗, 경영여신업자 ⊗
- ② 금지행위 : 보험설계사가 아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모집,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는 행위 등
- ③ 준수행위 : 모집장소와 대출 취급 장소를 명확히 분리, 민원 전담창구를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할 것

6. 보험중개사 :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금융감독원에 등록 및 영업보증금 예탁)

※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는 보험협회에 등록·말소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보험모집

- 1) 금융상품 :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상품
주의 보험상품은 투자성 상품이다. ⊗, 은행대출은 예금성 상품이다. ⊗
-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
vs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주의 보험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다. ⊗
보험설계사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다. ⊗

8. 모집종사자의 법정교육

- 1) 등록교육 : 모집종사자가 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 2) 보수교육 : 모집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위해 최신 보험관련 지식, 윤리의식 등의 정기교육(등록일로부터 매 2년 경과 때마다 교육) 주의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
- 3) 불완전판매방지교육(보험업법 시행령, 2020년부터 시행)
 - 모집종사자의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특별교육
 - 대상 :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계약비율 1% &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보험협회에서 대상자 선정)
주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대상자는 불완전판매 보험계약비율 5% 이상자이다. ⊗
주의 불완전판매방지교육 대상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선정한다. ⊗

9. 보험모집 프로세스

- 가망고객 발굴 → 접근 → 정보수집 → 가입권유 → 계약체결 → 소개확보
참조 판매 프로세스 각 단계가 함께 이루어져도 된다.
주의 독립적,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 1) 가망고객 발굴(판매활동 가장 기초단계) ⇨ 영업공약의 대상
 - ① 방법 : 연고(가장 기본적인 방법), 소개, 개척 등
참조 연고 고객이라고 해서 증권전달 생략은 잘못된
 - ② 소개의 장점 : 소개자 신용으로 판매용이, 방문에 대한 자신감 확보, 유력 가망고객 발굴용이, 실패 확률 낮고 생산성 높음
주의 보험가입 후 절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
 - 2) 접근 : 고객과의 첫 만남 단계이며 상품 판매시 유리한 환경과 여건조성

- 3) 정보수집 : 5대 필요자금 ⇨ 생활비, 양육비(교육비, 결혼자금), 주택구입비, 노후자금, 긴급 예비자금 **주의** 장례비 ⊗
- 4) 가입권유 : 고객의 니즈 및 재무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위험보장 설계 제시
- 5) 계약체결 : 보험영업의 최종목표이자 새로운 고객서비스의 시작단계
- 6) 소개확보 : 기존계약자의 소개로 새로운 가망고객 확보단계
⇨ 증권전달 및 사후관리 : 정확한 보험가입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완전판매의 실현단계

10.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2008년부터 시행)

- 1) 선발기준 :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가 인증
 - ① 선발대상 : 보험설계사 / 전속 개인대리점 **주의** 법인보험대리점 ⊗
 - ② 근속기간 : 동일회사 3년 이상 재직자
 - ③ 보험계약 유지율, 소득·실적(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 매 선발연도에 업계와 협의하여 기준 마련 **주의** 손해율 ⊗
 - ④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위반 無
주의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
- 2) 우수인증 효력상실 사유
 - ① 보험설계사 등록말소
 - ② 보험대리점 등록말소나 회사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
 - ③ 점포의 관리자가 되는 등 보험모집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인증도용,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로 인증받지 않고 인증 사용시
2년간 인증신청 금지
- 3) 우수인증 설계사 혜택
 - ① 언론을 통한 인지도 제고 지원 **주의** 별도의 수당지급 ⊗
 - ② 인증로고를 명함, 보험안내자료, 보험증권 등에 사용권한 부여
 - ③ 인증 유효기간은 1년(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주의** 2년 ⊗
주의 보수교육 등 일부 법정의무가 면제된다. ⊗

II. 손해보험 기초 이론 (2문항)

1. 위험 및 위험의 관련 개념

★ 위태하면 → 사고나고 → 손해생긴다.

TP “위태위태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서 손해” 를 보았다.

1) 위험 : 우연한 사고발생의 불확실성 또는 가능성 (위태 ×)

2) 위태 : 특정한 사고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① 물리적 위태

⇒ 인간의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을 의미

예시 도로상의 빙판, 공장 내 기름걸레가 흩어져 있는 상태

② 도덕적 위태

⇒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 내거나 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개인의 특성이나 정신적인 상태를 의미.
인간의 부정, 부도덕, 사기, 고의 등 감정이 적극적으로 작용

예시 고의방화, 강도, 사기

③ 정신적 위태 (= 기강적 위태)

⇒ 도덕적 위태와 같은 고의는 없으나 무관심 또는 부주의, 사기저하, 풍기문란 등 손해발생을 방관하는 정신적 태도를 의미하며 광의의 도덕적 위태에 포함

예시 졸음운전

3) 사고 :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 예시 폭풍우, 화재

⇒ 선박이 침몰되었다. 원인은? 폭풍우

⇒ 건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다 원인은? 화재

4) 손해(손실, 손상, 훼손 등) :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재산적 가치의 상실이나 감소를 의미

2. 위험의 분류

1)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 ① 주관적 위험 : 개인이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가 상이하므로 통계측정 불가능
- ② 객관적 위험 :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위험으로 통계측정 가능하므로 보험 가능한 위험

2) 순수위험과 투기위험

- ① 순수위험 : 이익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손해만을 발생시키는 위험
우발적으로 발생하며, 대수의 법칙 적용 가능 ; 상해, 사망, 화재, 교통사고 등 ⇨ 보험화 가능성 높음
주의 순수위험 모두 보험화가 가능하다. ⊗
- ② 투기위험(= 보험불가능 위험) : 손해와 이익이 모두 상존하는 위험
 - 주식투자, 신규사업 진출, 도박 **주의** 교통사고 ⊗
 - 위험부담 주체의 주관적 의사로 결정 **주의** 객관적 의사 ⊗
 - 대수의 법칙 적용 어렵다. **주의** 대수의 법칙 적용이 쉽다. ⊗
 -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보험가능 위험 : 인적 위험, 재산적 위험, 배상책임위험
주의 투기위험 ⊗

3. 보험가입 대상 위험의 특성

- 1) 다수의 동질적 위험 **주의** 이질적 위험 ⊗
- 2) 우연한 사고위험(발생여부, 시기, 정도) **주의** 치명성 ⊗
- 3)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위험 **주의** 불명확 ⊗, 불측정 ⊗
- 4) 자연계의 이상변동 등이 아닌 손실(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 5) 확률적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 **주의** 과거 통계 경향이 없는 위험 ⊗
- 6) 경제적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4. 보험의 정의

- 1) 동질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 계약자, 위험분담의 원칙)
- 2) 우연한 사고 발생
⇒ 우연적 사고위험의 요소 : 발생여부, 발생시기, 발생정도
- 3) 미리 일정률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하고
- 4)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자에게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 5) 경제생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

5. 보험의 기능

: 경제상 불안정의 제거·경감, 피해자의 보호, 신용의 보완

주의) 고용의 창출 ⊗, 자산을 안전하게 증식시키는 것 ⊗

6. 보험의 성립요건

: 사고의 우연성·불확실성, 다수의 동질적 위험, 보험료·보험금의 산정
(위험발생 확률을 예측하여 산정)

주의) 다수의 다양한 위험 ⊗

7. 보험의 기본원칙

- 1) 위험의 분담원칙 :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경제단위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보험료를 각출하고 이 보험료를 통해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원칙
- 2) 대수의 법칙 : 동일한 사실을 대량으로 관찰할 경우 일정한 우연적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확률)이 통계적으로 추출되고 예측할 수 있다는 법칙
- 3)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의 총액과 합치해야 한다.(보험회사 관점) 주의)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 ⊗

4) 이득금지의 원칙(손해보험 고유의 원칙)

- ⇒ 보험에 의하여 이득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 보험사고시 실제의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음
- ⇒ 인보험인 상해보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단 실손보상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도 적용
- ⇒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등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도입
- 주의**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

5) 실손보상의 원칙

-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액 만큼 보상

6) 비례보상의 원칙(비례적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

- ⇒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부보비율)로 손해를 보상한다는 원칙

7) 급부 · 반대급부 균등(계약자의 관점)의 원칙(Lexis의 법칙)

- ⇒ 보험회사가 특정 사고의 발생확률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과 · 부족이 없어야 한다.

8. 보험의 분류

※ 보험과 관련한 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사업 허가규정(보험업법)

| 구분 | 분류 | 분류 | 종류 |
|-----|-------|--------|--|
| 법률상 | 상법상 | 손해보험 |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보험 |
| | | 인보험 | 생명, 상해 |
| | 보험업법상 | 생명보험 | 생명, 연금(퇴직)보험 |
| | | 손해보험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중, 재보험 |
| | | 제3보험 | 상해, 질병, 간병보험 |
| 제도상 | 가입대상 | 재물에 관한 | 화재, 도난, 기계, 선박, 적하 |
| | | 인신에 관한 | 상해, 여행자 |
| | | 책임에 관한 | 영업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근로자재해배상책임, 자동차책임(대인) |
| | | 이익에 관한 | 기업휴지보험 |

| 구분 | 분류 | 분류 | 종류 |
|-----|--------------|----------------|---|
| 제도상 | 운영형태 | 강제보험 (의무보험) | 특수건물화재, 가스사고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 원자력, 자동차책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주의 단체상해보험 ⊗ 강제 = [특,가,체,유,원,자,다]는 무조건가입!! |
| | | 임의보험 |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ex) 자동차임의종합보험 |
| | 납입주체 | 가계성보험 | 개인 |
| | | 기업성보험 | 기업 |
| | 보험기간 보험구간 | 단기보험 | 1년 이하의 소멸성보험(자동차보험) |
| | | 장기보험 | 3년 이상, 위험 + 저축기능, 만기, 만기·해약환급금(연금보험) |
| | | 기간보험 |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언제부터~언제까지) 시간/일시 |
| | | 구간보험 | 적하보험, 운송보험(어디서부터 ~ 어디까지) |
| | | 혼합보험 | 조립, 건설공사, 여행자보험 [기간 + 구간(장소)] 주의 적하보험 ⊗ |
| | 경영주체 | 공영보험 | 산업재해보상, 건강, 무역(국가 운영) 주의 상해보험 ⊗ |
| | | 민영보험 | 자동차, 상해, 동산종합, 화재, 보증 (민간보험사 운영) |
| | 위험분담 관계 | 원보험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을 직접 인수하는 것 |
| | | 재보험 | 원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험계약상 책임의 일부를 다시 다른 보험사에 전가시키는 것(항공기나 선박에 적용) ⇨ 각각 비율만큼 부담 |

다음 중 의무보험인 것은?

- ①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특·가·체·유·원·자·다만 외우면 공짜문제
- ② 단체상해보험
- ③ 기업후지보험
- ④ 여행자보험

Ⅲ. 보험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2문항)

1. 보험범죄와 보험사기 : 실무상 같은 개념 [엄격히 구분 ㊗]

1) 보험사기 행위 :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2) 보험사기의 구분

- ① 경성사기 :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TIP** 경고
- ② 연성사기(기회사기) :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행위 **TIP** 연기과장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처벌관련 규정(2016. 9. 30 시행)

1) 보험사기의 처벌규정

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상습범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

- ① 상습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② 미수범 : 처벌

3) 보험사기로 인한 가중처벌

보험사기로 인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이득액 상당의 벌금 병과

- ① 이득액 50억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② 이득액 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주의** 50억 이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

4) 보험회사의 의무(보험사기조사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방지)

① 법령으로 정한 사유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보험사기의 보고 및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3. 보험범죄의 특성 및 피해

- 1) 보험범죄의 특성 : 복합성, 다양성, 범죄입증 곤란성, 범죄조직의 조직화 **주의** 범죄의 단순성 ⊗
- 2)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 : 모방범죄의 증가(10대들이 무의식적으로 범죄에 동조), 사회적 비용의 증가, 건전한 윤리의식 및 생명 존중의 가치관 파괴
주의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

- 1) 보험범죄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고 ⇨ 범죄 실행 용이, 혐의 입증 어려움, 병원 및 정비업소 등과 이해관계 쉽게 부합
- 2) 보험범죄의 고의적 유발, 허위사고 신고로 보험금 과다 청구하는 등 복합적인 범죄 유형 발생

5. 나이롱환자 근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1)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관리의무 부과
 - ①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에 대한 기록 및 관리 의무화[3년 보관]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환자는 부과하지 않음)
 - ② 보험회사는 환자 동의 없이 외출·외박기록 열람 가능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주의 열람할 수 없다. ⊗
 - ③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외출·외박시 의료기관 허락 필요
[의료인 또는 종사자 서명] 필요
 - ④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상태 호전시 퇴원 또는 전원 지시 가능

6. 정비업체 보험사기 방지 : 자동차관리법

- 1) 정비의뢰자의 동의 없는 임의수리 금지
- 2) 정비 전 사전견적서 교부와 정비 후 내역서 교부 의무화
주의 요구한 경우만 교부한다. ⊗
- 3) 재생품 사용시 정비의뢰자에게 사전 고지,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7. 음주운전 처벌 강화 :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사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1) | |
|---------------------------------|---|
| 구 분 | 처 벌 |
|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음주운전 상해사고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위반횟수 | 혈중알콜농도 |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 2) |
|-----------|-------------------------------------|--|
| 1회 위반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 0.08~0.2%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 0.03~0.08% | 1년 이하 징역 / 5백만원 이하 벌금 |
| 2회 위반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운전 관련 면허 행정처벌(도로교통법 제82조, 시행규칙 별표28) | | |
|---|--|--------------|
| 0.03%~0.08%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 사고가 난 경우 면허취소 (2년간 면허취득 불가) ·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면허취소 (5년간 재취득 불가) | |
|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시 | 면허취소 | 1년간 면허 취득 불가 |
| 음주운전 2회 이상 | 면허취소 | 2년간 면허 취득 불가 |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면허취소 | 3년간 면허 취득 불가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아니한 경우(도주한 경우) | 면허취소 | 5년간 면허 취득 불가 |

주의 0.03%~0.08% 미만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취소는 되지 않는다. ⊗

주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이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면허취소는 되지 않는다. ⊗

8. 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1)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 운전

- * 최고속도의 20% 감속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 최고속도의 30% 감속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9.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별 벌점 및 범칙금

- 면허정지 : 누적점수 40점 초과시
- 면허취소 : 1년간(121점), 2년간(201점), 3년간(271점) 벌점 초과시

10.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법령

개념정리 : 특례적용 받는다 = 처벌 안 한다 = 공소제기 안 한다 ⇨ 같은 의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①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But, 치사에 이르지 않은 치상죄, 재물손괴 등에 한해 위반행위의 결과에 따른 처벌의 특례를 둠
- ② 특례 예외의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특례적용 못 받는다 = 처벌한다 = 공소제기 한다 ⇨ 같은 의미]
※ 특례의 예외 사항 ⇨ 피해자 구호 조치 하지 아니하고 도주 및 유기, 신호위반,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규정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 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주의** 제한속도 10km/h 초과 ⊗

2) 도로교통법

- ①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②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주의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훈시규정으로, 단속되어도 처벌되지 않는다. ⊗

- ③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 ④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및 정차 금지 의무화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
- 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중앙선이 없는)
 -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 통행 ⇨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 ⑥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or 일시정지
 - 이미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을시 진로 양보
- ⑦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 신설
 -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 ⑧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횡단보도 '통행할 때' + '통행하려고 할 때' : 일시 정지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① 음주운전(약물영향 포함)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규정
 - 음주운전으로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②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일명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별도의 가중 처벌 신설
 -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5년내 2회) 후 재 취득 시 조건부 운전면허취득(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
 - 장치 해제 또는 조작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장치고장 방치 또는 음주여부 대리 측정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0 2 4 · 손 해 보 험 연 수 교 재

P · A · R · T

2

보험법규

01.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02.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

I.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4문항)

1. 보험계약 관계자

- ⇨ 보험계약체결 직접당사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 ※ 소멸시효(회사 청구권 - 2년 / 계약관계자 청구권 - 3년)
 - 보험회사 [2년] : 보험료청구권
 - 보험계약자 [3년] : 보험료반환청구권 또는 적립금반환청구권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3년] : 보험금청구권
- ① 보험회사(보험자)
 - ⇨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 인수 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 보험료 반환의무자
- ②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의무자)
 -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대리인 통한 계약체결 가능
- ③ 피보험자(손해보험 사고보험금 청구권자)
 - ⇨ 손해보험에서 사고발생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④ 보험수익자
 - ⇨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의 요소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사망보험금 수령자)
 - ※ 보험금 청구권 ⇒ 손해보험 - 피보험자 / 인보험 - 수익자

1) 보험회사의 주요의무

- ①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교부 **주의** 피보험자 ⊗
 - ⇨ 위반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② 보험증권 교부의무(의무는 있으나 교부 안했다고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 ③ 청약의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 전 담보
 - : 30일 이내 통지 없을시 승낙간주(승낙의제)
 - ⇨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 승낙 전 보험사고 발생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책임을 짐

④ 보험금 지급의무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짐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면책사유)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전쟁, 기타 변란, 자연소모,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 **주의**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1년간 미행사 ⊗

TIP 보험회사 의무가 아닌 것

⇒ 고지의무, 손해방지의무, 위험변경 · 증가 통지의무 등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①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보험료 납입의무자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② 피보험자

⇒ 손해보험에서 사고발생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함

③ 보험수익자

⇒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의 요소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사망보험금 수령자)

주의 보험수익자의 개념은 손해보험에서도 존재한다. ⊗

3) 보험계약자의 주요의무

① 보험료 납입의무

②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 계약체결시 보험료산정, 계약인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알리는 의무

- 고지시기 : 보험계약 성립 전까지, 청약서상 질문표 사용,
구두 · 서면 제한없음 **주의** 반드시 서면 ⊗

- 고지의무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이들의 대리인 **주의** 보험수익자 ⊗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대리권이 없어 고지수령권이 없음

⇒ 인보험 보험의와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 있음

TIP 고지수령권자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인보험 보험의(保險醫)

- 고지위반시 보험회사는 계약해지 가능 (주의) 무효 (X), 취소 (X)
 ⇨ 위반사실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성립 3년 이내
 해지 가능 (주의) 사고발생 후 해지할 수 없다. (X)
 - 고지사항 :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과거병력,
 보험목적 건물의 종류, 구조, 사용목적 (주의) 학력 (X)
 - 해지권행사 :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을
 해지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 계약성립 후 위험변경, 증가사항을 알리는 의무
- 보험료 재조정[증액, 감액]이나 변경 위험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보험회사는 해지 가능 (주의) 무효 (X), 취소 (X)
 -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피보험자 변경, 보험목적물 양도나 이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 화재보험 건물용도 변경, 개축(15일 이내), 다른 보험회사와 중복계약 등
 (주의) 피보험자 연령 및 건강상태 (X)
- ④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 통지의무 게을리하여 손해증가시 증가된 손해 보상책임 없음
- ⑤ 손해방지의무
- 사고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사고발생 후 피해증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했을 때 그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주의) 50% 내에서 보상한다. (X)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의무 부담한다.
- ⑥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안 때, 회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받은 때는 1개월 이내 증액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의) 무효 (X)
 ⇨ 통지효과 - 보험료증액, 보험금감액, 보험계약 해지가능
- ⑦ 위험유지의무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

보험회사가 화재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 함 -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빼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 그 내용으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는다.
- ②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에 가입한 건물 내 영위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알림
-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을 타인에게 양도 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 ④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보험의 목적(What)과 보험계약의 목적(Why)

※ 보험의 목적 = 보험에 부쳐지는 대상

- ⇒ 손해보험 :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
- ⇒ 인보험 : 생명이나 신체가 보험에 부쳐진 자 = 피보험자

※ 보험계약의 목적 = 피보험이익(손해보험만의 개념)

- ⇒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정한 경제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함 **주의** 보험계약자 ⊗

1) 피보험이익의 요건(보험계약의 목적)

- ① 피보험 이익이란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 ②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
- ③ 피보험이익의 요건(3가지) :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 **주의** 영구성 ⊗
 - 적법성 : 적법한 것(탈세, 도박 등으로 인한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 경제성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확정성 : 불확정한 이익 또는 확정할 수 없는 이익은 보험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다. ⇒ 현존뿐 아니라 장래의 이익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피보험이익 될 수 있음
 - 주의** 확정 가능하더라도 장래의 이익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
 - 주의** 확정성이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

④ 피보험이익의 효과(효용)

- 보험회사의 책임범위 결정
- 보험은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방지
-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분하는 표준
-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각기 다른 피보험이익이 존재

주의 하나의 피보험이익만 존재 ⊗

참조 평면TV(보험의 목적물) : 도난보험과 배상책임으로 각기 다른 피보험이익 존재

3. 보험료와 보험금

1) 영업보험료(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① 순보험료(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위험보험료 : 보험사고시 지급보험금의 재원
- 저축보험료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시 만기환급금의 재원

② 부가보험료(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 신, 유, 수)

⇨ 사업비로 쓰일 돈

- 신계약비 : 보험회사가 신계약 모집시 필요한 제경비, 보험설계사 급여
- 유지비 : 보험계약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점포유지비, 내근직원 인건비
- 수금비 : 계속보험료 수금하는데 필요한 제경비

2) 보험금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시 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4. 보험사고의 요건 주의 경제성 ⊗

1) 불확실성(우연한 사고) : 사고발생의 여부, 시기,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불확정 한 것

2) 발생가능성 : 발생 가능한 사고

3) 한정성 :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 발생한 사고

4) 적법성 : 고의나 불법에 의한 사고는 보험사고 될 수 없다.

※ 경제성은 보험사고의 요건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의 요건

5.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 보험가액은 손해보험만의 특징이다.

주의 보험가입금액은 손해보험만의 특징 ⊗

1)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상 보상 최고한도액(보험증권상 임의로 정한 금액)
- 보험사고시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최고한도액, 보험료 산정의 기준

2) 보험가액 : 법률상 보상 최고한도액(물건의 시가로 쉽게 생각하기)
- 보험사고시 피보험자의 손해를 금전적 평가한 것, 손해액 산정의 기준

주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

| 비 고 | 보험가액 vs 보험가입금액 비교 | 보상방법 | 보상한도(기준) |
|------|-------------------|------------|----------|
| 전부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실손보상 | 보험가입금액 |
| 일부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비례보상 | 보험가입금액 |
| 초과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실손보상 | 보험가액 |
| 중복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 실손보상(연대비례) | 보험가액 |
| 공동보험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의 합 | 실손보상(비례) | 보험가입금액 |

※ 초과, 중복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적용으로 보험가액(시가)기준으로 보상

3)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의 판단 기준

4) 전부보험 : 보험가액만큼 전부가입하여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

5) 초과보험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② 이득금지원칙으로 보험가액 한도로 실손보상

주의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비례보상 ⊗

③ 보험계약자의 시기로 인한 경우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

주의 해지 ⊗, 초과된 부분만 무효 ⊗

⇒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주의** 반환해야 한다. ⊗

④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6) 중복보험

- ① 다수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 ② 보상방법 : 보험회사 각자의 보험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며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 ③ 초과보험, 중복보험은 이득금지원칙 적용으로 보험가액[시가] 기준으로 보상

7) 일부보험

- ① 보험가입금액보다 보험가액이 큰 보험
- ② 보상방법 : 보험회사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비례보상]한다.

주의)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

[예시] 시가 10억원(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5억원, 화재손해액 8억원
 지급보험금 ⇒ 8억(손해액) × [5억(보험가입금액) ÷ 10억(보험가액)] = 4억원

- 비례보상 방법
 : 보상액(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8) 공동보험

⇒ 두 곳 이상 보험회사가 동일목적물에 대해 체결한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보험회사 각자의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또는 실손보상)

6.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료기간

- 1) 보험기간 :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 계약의 책임개시는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위험기간, 책임기간)
- 2) 보험계약기간 :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 보험회사의 승낙시점부터 개시 [보험회사의 승낙(30일 이내)]
 - ① 예정보험 : 보험계약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일찍 시작하는 보험

- ② 소급보험 :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일찍 시작하는 보험
- ③ 보험회사의 책임개시 요건 : 초회보험료 납입시점
 - 주의 보험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은 일치하여야 한다. ⊗

- 3) 보험료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과 구분할 것)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그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그 기간을 말하며 통상 1년을 원칙으로 함
- 주의 보험계약기간은 통상 1년이다. ⊗

7. 보험계약의 특성

- 1) 불요식 · 낙성계약
 - 주의 요식계약성 ⊗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란 계약당사자간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며 다른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 ⇒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승낙(諾)으로 이루어(成) 짐
 - ⇒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제한 없다. 주의 반드시 서면 ⊗
- 2) 유상 · 쌍무계약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여 준 대가로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대가로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 3) 사행계약 :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불일치성에 의해 사행계약성을 지닌다.
- 4) 계속계약 : 보험계약은 1회적인 보험료납입 및 보험금지급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다.
- 5) 부합계약 : 보험회사가 미리 정형화한 보험약관 제시하고 보험계약자가 포괄승인 ⇨ (부합 = 府(떠안을 부), 승 = 약관)
- 6) 상행위[상법은 보험을 상행위로 규정], 선의계약, 단체성
 - 주의 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 원칙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의 단체성 때문이다. ⊗

8.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청약 + 승낙 = 성립)

⇨ 보험계약자의 청약 및 보험회사의 승낙

주의 최초 보험료 납입 ⊗, 보험증권 교부 ⊗

- 1) 청약 :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 구두이든 서면이든 상관없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주로 청약서를 이용함
- 2) 승낙 : 승낙의 방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제한 없고 회사는 30일 이내 낙부통지(30일이 지나면 승낙으로 간주 = 계약 성립)
 - ※ 보험증권 : 증권수령 여부와 계약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없음
 - ※ 책임개시요건 : 보험료 수령한 때부터 보험회사 책임개시(성립과 책임개시 요건은 다르다)
- 3) 승낙의제 :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낙부통지
 - ⇨ 통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

9. 보험계약의 변경

- 1) 특별한 위험의 소멸 :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후의 보험료 감액청구 가능
- 2) 위험의 변경·증가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되어 보험계약자가 이를 통지한 때에 보험회사는 새로운 위험에 대해 보험료 증액청구, 계약해지 가능
 - ⇨ 통지 불이행시 위반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해지 가능

3) 보험자의 파산

계약자 해지 가능(해지 없이 3개월 경과시 당연 실효)

10.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당연한 소멸사유

- ① 보험기간의 만료로 보험기간이 끝난 때 주의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
- ② 피보험이익 소멸

- ③ 보험회사 파산시 보험계약 해지 가능, 파산 후 3개월 경과시까지 해지
않을시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음(실효) **주의** 6개월 ⊗
- ④ 전손사고 발생 ⇨ 화재발생으로 전부 소멸
⇨ 전손사고 발생 후 보험금 전부 지급된 경우 종료
: 책임보험, 상해보험은 소멸되지 않음
- 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난 때까지 보험료의
전부나 1회 보험료(최초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그 계약은 소멸한다.
주의 효력상실된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해지에 의한 소멸사유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 ① 보험계약자 임의해지 또는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해지
- ②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 ③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 ④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해지
- 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생긴 위험의 변경·증가로 인한 해지
- ⑥ 약관의 규정에 의한 해지

참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참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 보험회사의 파산

보험계약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보험사고(전손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전부 지급
- ② 피보험이익의 소멸
- ③ 보험회사 파산 후 3개월 경과
- ④ 보험료 납입기간의 만료 - 보험기간 만료시 소멸된다.

11. 보험계약의 무효

- 1) 계약이 성립됐으나 보험계약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 2) 보험사고시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

참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소와 다름

- ①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중복보험, 사기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 ②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단,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 ③ 피보험자 서면동의(전자문서 포함)를 얻지 않은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 계약
- ④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 **참조**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경우는 무효 아님 ⇨ 상법 규정

12. 보험계약의 부활

- 1) 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점에서 3년 이내만 가능
- 2)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 납입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 이행

13. 청약 철회, 계약취소 : 계약자보호제도

- 1) **청약 철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언제든지 철회 가능.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험회사는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초회보험료 반환
 (지연시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 더하여 지급)
 ◦ **주의** 정기예금이율 ⊗, 이자 지급의무가 없다. ⊗
- 2) **계약취소** : 3대 기본지킴이 위반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① 장기보험은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 더하여 지급
 - ② 일반보험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 더하여 지급

14. 보험약관

보험회사가 계약 내용에 대해 미리 정해 놓은 표준적인 계약조항
 ⇨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 우선

◦ **주의** 보통약관은 특별약관에 우선하여 해석된다. ⊗

- 1) **보통약관** : 일반적, 보편적, 표준적인 계약조항을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
- 2) **특별약관** :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보통약관을 보완, 변경, 추가하여 정한 약관
 ⇨ 보통약관에서 면책한 위험을 특별약관에서 담보되도록 하는 경우가 대표적

3) 약관의 기능 및 기본요건 **참조** 공평 + 명확 + 일치 + 쉽게 + 적합

- ① 거래비용 절감 **주의** 증가 ⊗
- ②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한 거래조건 적용이 가능하다. **주의** 차별적인 ⊗
- ③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피하고 이해하기 쉽게 한다. **주의** 법률용어 사용 ⊗

4) 보통약관 기재사항 **주의** 보험료 납입일자 ⊗

- ① 보험금 지급사유 및 면책사유
-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의무를 이행할 시기와 미이행시 손실
- ③ 보험계약의 무효 원인
- ④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지원인과 해지시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5) 약관해석의 원칙 :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약관 변경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

주의 손해보험협회 ⊗

- ① 계약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
- ② 보통의미[평이한] 해석원칙
- ③ 동종제한의 원칙 : 선행하는 열거사항과 동종의 사항만을 지칭
- ④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주의** 작성자 이익의 원칙 ⊗
⇒ 약관표현이 불분명할 때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주의** 합의에 따라 처리 ⊗
- ⑤ 수기우선의 원칙 : 필서 우선
- ⑥ 유효해석의 원칙 : 2가지 의미를 가지는 자구는 보험약관을 유효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 **주의** 작성자인 보험회사의 의도로 해석 ⊗

6) 약관의 변경과 소급효

주의 약관변경시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변경약관 효력이 없다. ⊗

- ① 약관변경시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고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보험 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
- ② 그러나, 금융위원회 약관변경 신고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익보호에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이미 체결된 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변경된 약관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 보통약관은 특별약관에 우선하여 해석된다.
- ② 약관을 해석할 때는 보험회사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약관표현이 불분명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비해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④ 필서와 인쇄가 모순되는 경우 필서가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수기우선의 원칙)

1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계약자 ≠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 **예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
 (※ 자기를 위한 계약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1) 계약체결 요건

-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주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타인의 위임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2) 계약의 효과

- **공통** : 고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통지 의무
- ① **보험계약자** : 보험료 지급의무, 손해방지의무
 ⇨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료감액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계약해지권
- ② **피보험자(손해방지의무) 및 보험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피보험자 권한 ○ / 계약자 권한 ×)
- ③ **계약 해지**
 ⇨ 계약자는 피보험자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주의** 해지 가능 ⊗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없다.
주의 있다. ⊗
-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지체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는다.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받음**

16. 보험목적의 양도 **참조** 유효한 보험계약 + 물건 + 물권적 양도

- 1) 매매, 증여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와 구별된다.
- 2) 인보험의 경우 보험목적 양도 인정 안 됨 **주의** 인정된다. ⊗
- 3) 보험목적이 양도된 때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추정**). **주의** 승계되지 않는다. ⊗, 간주된다. ⊗
- 4)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 **동의를 있어야** 승계가 가능 **주의** 동의 없이 ⊗
- 5) 보험목적은 동산, 부동산 등 물건이며 유체, 무체재산도 포함
- 6) 보험목적의 양도는 물권적 양도이어야 한다. **주의** 채권계약만으로 유효하다. ⊗
- 7) 양도의 채권계약만으로 부족하고 소유권이 이전하는 물권적 양도가 있어야 한다.

17. 보험자 대위(보험회사가 대신 위임받는 권리)

- 인보험 : 보험자대위 인정되지 않음
- 손해보험 : 이득금지원칙에 의해 보험약관에 따라 대위권 행사

- 1) **잔존물 대위** : 보험목적의 전부멸실, 전손사고 및 보험금 전액 지급시
보험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취득
 - ① 1억 기계 가입 후 전손사고로 1억 지급시 고철(잔존물)처분 권리는 보험회사가 가짐
 - ② 권리이전 시기 : 보험사고가 발생한때가 아니고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 **주의** 사고발생 시점 ⊗
 - ③ 일부보험 : 보험금액에 대한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정함
- 2) **청구권 대위** :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일부손해 포함)에 대하여 청구권 취득
 -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의**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만 권리 행사 가능 ⊗
 -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 권리 이전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

18. 보험사업의 영위

- 1) **보험사업 허가** :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주의** 유한회사 ⊗
 - ⇨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은 보험회사로 봄
 - ① 보험종목별 금융위원회 허가 **주의** 금융감독원 허가 ⊗
 - ②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허가 받은 자는 제3보험업 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 2) **허가신청서류** : 정관,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기초서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 **기초서류** :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주의** 사업계획서 ⊗, 상품설명서 ⊗, 정관 ⊗, 보험증권 ⊗

- 3) **보험업법상 허가종목**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① 생명보험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② 손해보험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 ③ 제3보험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4) **경영의 제한**
 - ① **경영가능 종목**
 - 생명보험의 재보험, 제3보험의 재보험
 - 소득세법에 의한 연금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 ② **경영불가[제한]** :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 경영

- 5) **손해보험사 질병사망[특약] 영위조건**
 - ① 만기 80세 이하 **주의** 100세 이하 ⊗
 - ② 보험가입금액 : 개인당 2억원 한도
 - ③ 납입보험료 > 만기환급금[보장성보험]
 - ⇨ 만기시 지급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범위 내 **주의** 1.5배 이내 ⊗

19. 국내보험회사 자본금

- 1) **보험업 개시** : 300억(일부종목 영위시 50억 / 외국보험회사 30억)

2)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 ① 보증보험, 재보험 : 300억(효과 있는 암기법) **TIP** “보·쌈”
- ② 자동차보험 : 200억 **TIP** “자·리”
- ③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 150억 **TIP** “하·리·오”
- ④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100억
TIP “화·일” ⇔ [해상보험 ×]
- ⑤ 부동산권리보험, 기술보험 : 50억

3)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 총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 이용 모집, 자본금의 3분의 2이상 납입
주의 100분의 80 이상 ⊗

4)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생명, 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등)

：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2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 납입
－ 취급종목 : 생명, 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상해, 질병 등
⇨ 자동차, 화재, 해상, 연금, 간병 등 종목 제외

20. 보험사업의 일반적 규제

1) 보험계약 체결의 제한

： 보험회사가 아닌 자 및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계약 체결·중개·대리 불가

2) 인가·신고·보고 사항(금융위원회)

- ① 인가 : 보험회사 상호간 협정의 체결, 변경, 폐지
- ② 신고 : 기초서류 변경 **주의** 기초서류 변경은 인가사항이다. ⊗
- ③ 보고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정관 변경, 본점의 영업 중지 또는 재개, 최대주주의 변경,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 등

21. 보험관련 기관

- 1) **손해보험협회** : 보험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와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
⇒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및 건의, 보험대리점 변경사항 신고업무, 해상, 보세보험 계약인수업무
- 2) **보험개발원** :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 3) **보험연수원** : 보험대리점 연수/자격시험
- 4) **금융감독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수행, 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기관이용자와 금융기관간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설치**
 - 주의 금융위원회 ⊗
 - ① 판정에 구속력없어 판정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다.
 - ② 조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주의 할 수 없다. ⊗
- 5)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제정 및 개정을 심의·의결한다.
 - ⇒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II.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사례 (4문항)

1. 보험 산업의 특성

- ⇒ 공공성, 사후확정성, 복잡한 보험수리기법 사용 등의 전문성, 보험이익의 사후정산 ⇒ 국가의 감독 필요

2. 완전판매

- 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 부분 전달, 약관 전달 및 설명]
 - ⇒ 3대 기본지키기 미준수시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주의** 1개월 이내 ⊗
 - ⇒ 보험계약자 동의시 청약서, 보험약관 등을 전자우편으로 교부 가능

3. 모집자실명제 및 상품설명제

1) 모집자실명제

- ⇒ 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주의** 주민번호 ⊗
- ⇒ 모집자실명제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의** 벌금 부과 ⊗

2) 상품설명제

- ① 보험계약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제공 **주의** 전문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우 녹취를 통해 확인 **주의** 자필서명이 필요 ⊗
-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㉗ 이미 가입[최초 계약시 설명의무 이행]된 보험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계약
 - ㉘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간 거래종류, 기간, 금액 등 가입조건을 미리 정하고 범위 내 계속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4. 보험료 영수제도

- 1)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 수납
- 2) 보험료는 현금수납 원칙
- 3) 해외송금 보험료 수납은 현지 관례에 따른다. **주의** 국내관례 ⊗
- 4) 선일자수표, 은행도어음은 취득일로부터 1월 내에 결제되는 것
⇒ 1월이 경과하면 자동 부도처리 한다.
주의 만기 도래하면 부도처리하여야 한다. ⊗

5. 단계별 설명의무

■ 보험계약 체결권유,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청구, 보험금 지급요청 단계로 구분

- 1)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주의 음성녹음으로 설명해야 한다. ⊗
- 2)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계약체결단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①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의 감액 청구, 해약환급금 산출근거,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등 **주의**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

② 보험계약 체결 단계

: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 존재 여부, 보험계약 승낙거절시 거절 사유 등

③ 보험금 청구 단계

: 담당부서, 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

④ 보험금 지급요청 단계

: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보험금 심사 지연시 지연사유 및 예상지급일

6. 실손의료보험

1) 판매시 준수사항

- ①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 항목 보상을 충분히 설명
- ② 계약자 동의를 거쳐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 사전확인
- ③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비례분담 등을 충분히 설명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함

2) 실손의료보험 계약시 절차

: 의료비조회 동의서 징구 → 중복가입조회 및 결과안내 → 비례보상 설명 → 청약서 작성

7. 통신수단을 이용한 상품판매시 준수사항

1)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주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

2)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내용 확인·정정 요청,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화(또는 컴퓨터통신)이용 체결계약 해지시 확인 내용

- ① 보험계약자 본인 여부
- ②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 동의 여부
-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 피보험자 동의 여부

주의 상품설명서 수령여부 ⊗,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 자필서명 여부 ⊗

8. 모집질서 관련 준수사항

1) 보험안내자료

: 보험모집을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등의 제반 홍보물

- ① 보험계약 체결 권유단계 : 상품설명서
 - ⇒ 상품설명서 제공 제외 :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보험계약
- 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서, 약관, 설명서, 보험증권
 - ⇒ 보험계약 승낙시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 ③ 사업연도 만료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된 계약
 - : 보험계약관리내용 연 1회 이상
 - ⇒ 기업성보험 · 전문금융소비자 대상 보험계약 제외

2) 보험안내자료 필수 기재사항

- :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등

주의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대납에 관한 사항 ⊗

3) 특별이익제공 금지(보험업법 §98)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 ②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
- ③ 기초서류에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 지급 약속
 - 주의 기초서류에 정한 보험금액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
- ④ 보험료 대납, 대출금 이자 대납
- ⑤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제공 가능
 - 주의 큰 금액 ⊗
- ⑥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보험업법 제97조)

- ①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②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보다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릴
- ③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
- ④ 기존계약 부당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을 권유(승환계약)
- 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 또는 동의 없는 계약 모집
- ⑥ 자필서명 받지 않고 대신 서명
- ⑦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계약 모집

- ⑧ 위반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보험업법),
1억원 이하의 과태료(금소법)

주의 만기상품 계약자에게 타 보험상품 가입권유하는 것은 금지행위이다. ㉨

5) 무자격자 모집위탁 금지(보험업법 제99조)

- ⇒ 무자격자 모집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6)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금소법 §25)

- ⇒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수수료·보수 등 대가를 지급하는 등 금소법 25조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자기계약의 금지(보험업법 제101조)

- ⇒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당해 대리점 또는 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
⇒ 위반시 등록취소

8) 기타 모집종사자 준수사항

-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 제출서류 변경시 협회 신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보험대리점 신고사항 예시
 1. 대리점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3. 보험대리점 지점이 신설·폐쇄된 경우 등
- ② 보험회사 : 보험계약 모집 위탁 시 보험모집 위탁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사항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9.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자율규제)

1) 특별이익제공

- ① 보험회사 제재금 : 최저 2백만원 ~ 최고 5천만원
- ② 모집종사자 제재금 : 최저 1백만원 ~ 최고 3천만원
 - 참조 보험회사 임직원 : 적용 연납보험료 전액 + 특별이익 제공 금액
 - 참조 모집종사자 : 적용 연납보험료 50% + 특별이익 제공 금액

③ 특별이익 제공약속 : 최저 1백만원 ~ 최고 1천만원

2) 경유처리

① 보험회사 임직원 ⇒ 보험중개사, 대리점, 설계사 : 최고 3천만원

② 보험대리점, 설계사, 중개사 ⇒ 타 소속
: 최저 1십만원 ~ 최고 1천만원

3) 다른 회사 모함, 허위사실 유포 : 최저 3십만원 ~ 최고 1천만원

4) 무자격 모집행위 : 최저 1십만원 ~ 최고 3천만원

5) 승환계약[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 모집행위자 1인당 최고 3천만원 / 건당 100만원

6) 금지행위가 아닌 것 : 보험계약 인수거절, 수수료 미지급 관련 민원 등

7) 위반사례

① 모집자격이 없는 자동차판매원이 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으로 처리하고 받은 수당을 자동차 판매원에게 지급
⇒ 무자격자 모집위탁 금지 위반

② B대리점 소속 설계사 성춘향은 계약자에게 월 보험료 5만원 상당 실손의료보험 계약 체결 후, 감사표시로 2만원상당 상품권 선물
⇒ 위반사항 없음(이유 : 3만원 이하)

③ A대리점 소속 설계사 이몽룡은 B대리점 소속 성춘향이 모집한 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하여 성춘향에게 자기가 받은 수당일부를 지급
⇒ 경유처리에 해당

④ A대리점 변학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태아보험 가입시 50만원 상당 외제유모차를 증정한다는 내용 기재
⇒ 특별이익 제공약속 금지 위반

⑤ A대리점 변학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태아보험 가입시 50만원 상당 외제유모차를 증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계약체결 후 유모차를 제공
⇒ 특별이익제공 금지 위반

10. 보험계약정보 보호 **주의** 보험정보 ⊗

- 개인 보험계약정보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보험회사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들의 철저한 고객정보 관리·감독 필요
- 소비자의 2차 피해(인터넷 회원가입, 명의도용,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 방지 목적 **주의** 보험범죄 ⊗

1) 보험계약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① 보험계약정보 제공 :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보험계약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제공(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필수)
- ② 보험계약정보의 조화에 대한 동의 : 중복보험 가입여부 사전조회
- ③ 상품소개 등 영업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 할 수 있다.
- ④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등 **주의** 취미 ⊗, 웹사이트 방문시 단순 쿠키 정보 ⊗**
- 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개인정보 파기

- ① 전자적 파일형태 :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포맷이나 영구삭제
- ② 기록물, 인쇄물, 서면 : 파쇄 또는 소각
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암호화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사본 저장 후 파쇄 또는 소각 ⊗

11.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 1)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 진정 및 시정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 3) 시정명령 : 법무부 장관 **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 시정명령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4) 신고내용 : 보험가입 청약거절
- 5)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금지 신고 : 손해보험협회
- 6)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차별을 받은 경우 신고 가능자
: 장애인, 장기기증자 본인 또는 대리인 **주의** 보험회사 직원 ⊗

P · A · R · T



손해보험

- 01. 손해보험의 개요
- 02. 화재보험의 이해
- 03. 해상보험의 이해
- 04. 특종보험의 이해
- 05.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 06. 연금저축보험의 이해
- 07. 퇴직연금의 이해
- 08. 자동차보험의 이해

I. 화재보험의 이해 (3문항)

| 구 분 | 대상물건 | 담보내용 | 적용약관 |
|------------|--------------------|--|--------------------------|
| 주택화재 보험 | 주택물건의 건물 및 수용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버락, 폭발, 파열 • 소방 및 피난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 등 비용손해 |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
| 일반화재 보험 | 일반물건 공장물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버락 • 소방 및 피난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 등 비용손해 | 화재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

1. 화재보험의 종류

- 1) 주택화재보험 : 주택물건의 건물 및 수용가재(폭발○, 파열○)
- 2) 일반화재보험 : 일반 및 공장물건

참조 일반화재보험에서는 폭발 및 파열을 담보하지 않음

2. 화재보험의 보상손해(재산손해 + 비용손해)

- 1) 재산손해 : 직접손해(화재), 소방손해(화재진압 과정), 피난손해
(피난지에서서 5일 동안)

주의 피난 중 도난 또는 분실손해는 보상 ⊗

- 2) 비용손해 **주의** 폐기물처리비용 ⊗, 오염물질제거비용 ⊗

- ① 잔존물 제거비용 : 보험목적물 제거 비용(해체, 청소, 상처비용),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
- ② 손해방지비용 :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 ③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④ 잔존물 보전비용 :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잔존물 제거비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에 유의!!)

화재보험에서 잔존물제거비용의 보상한도는?

- ①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보험가액의 20%
- ③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손해액의 10%**
- ④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재산손해액의 10%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고의나 중대한 과실(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
- ②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자연발열 및 발화,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 전기적 사고, 지진, 전쟁 등

4) 보상하는 손해

- ① 버락으로 집안의 냉장고 파손
- ② 화재진압을 위해 뿌린 물이 TV에 스며들어 고장
- ③ 옆집 화재로 주택 내 가재도구가 불에 타서 소실
- ④ 채무자가 악의에 의한 방화로 건물 소실

3. 주택물건, 일반물건의 80% Co-Insurance 적용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 비례보상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참조 건물가액이 1억일 경우 8천만원만 가입하여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 보상

4. 주택화재보험

1) 가입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병용주택 중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조산원 등) 건물과 수용가재

주의 콘도미니엄 ⊗, 오피스텔 ⊗, 기숙사 건물 ⊗, 공장내 기숙사 ⊗

2) 자동담보물건 : 다른 약정이 없어도 보험 목적에 포함

- ①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 ②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등

3) 명기물건 :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담보되는 물건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중품(휴대 가능, 점당 300만원 이상), 보석, 소프트웨어, 원고, 설계서, 그림, 골동품,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아적동산) 등

4)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재산보험금(화재보험금)

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지급
보험금은 손해액 전액 보상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는 보험가액 한도 보상)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text{지급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주택화재보험에서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손해액의 관계 >

| 계 약 내 용 | | 지급보험금 | |
|---------|----------------------------------|--------------------|--------------------|
| | | 일부손해의 경우 | 전부손해의 경우 |
|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경우(100%) | 손해액 전액 | 손해액 전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
| 일부보험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손해액 전액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가입금액 |
|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 | 비례보상 | 보험가입금액 |
| 초과보험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 손해액 전액 | 손해액 전액 (보험가액 한도) |

② 잔존물 제거비용 : 재산손해액(화재보험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재산손해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주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

(예) 보험가입액이 1억원, 보험가입금액이 4,000만원인 계약 후 손해액이 1,000만원, 잔존물 제거비용이 400만원 발생시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은 얼마인가?

(풀이)

$$\text{잔존물 제거비용 } 400\text{만원}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 } 4\text{천만원}}{\text{보험가입액 } 1\text{억원} \times 80\%} = 200\text{만원}$$

그러나, 손해액(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은 100만원이다.

∴ 답 = 100만원

③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은 위 재산보험금 계산방법과 동일

⇨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

주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

5. 일반화재보험

- 일반물건 :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및 부속건물 및 옥외설비, 야적동산, 숙박시설, 창고업자 건물로서 화물보관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 공장물건 : 발전소, 변전소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장 내 기계, 공장물건 구내에 있는 기숙사, 광석 및 천연가스 채취작업 하는 곳

1) 보상하는 손해

⇨ 재산, 비용손해는 주택화재와 동일하나, 일반화재보험 내용 중 폭발 또는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 지급보험금

① 일반물건은 주택화재보험과 동일하나, 재고자산은 공장물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공장물건 및 재고자산

가. 전부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경우

지급보험금 = 손해액 전액(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나. 일부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경우

$$\text{지급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다.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 \geq 보험가액)의 경우
지급보험금 = 손해액 전액(단, 보험가액 한도)

3)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①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 목적의 소재지, 수용 건물구조 및 용도,
건물 내 영위 직업 또는 작업 등

주의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

②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의 목적양도, 건물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 15일 이상 수선, 보험 목적 이전시

※ 위반시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 발생 주의 계약의 무효 ⊗

4) 손해방지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는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보험금 지급

5) 손해발생 통지의무

⇒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한 손해 증가시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주의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 해지 ⊗

6) 기타사항

① 책임시기 : 계약청약 승낙하고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받은
때부터 보장

주의 보험기간의 첫날 0시 ⊗, 청약을 승낙한 때 ⊗

② 보험계약의 무효 및 해지

가. 무효 :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 발생하였을 경우

나. 해지 : 보험계약자는 손해 발생전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

- 보험회사는 다음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가능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시 주의 무효 ⊗

⇒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 위반시

다. 보험금 지급기일 : 지급할 보험금 결정되면 7일 이내

6. 화재보험의 특별약관

- 1) 도난위험담보특약
- 2) 구내폭발위험담보특약
- 3) 풍수재위험담보특약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해일
주의 폭설, 우박 ⊗
- 4) 전기위험담보특약 : 전기장치의 전기적 사고 주의 전자위험담보특약 ⊗
- 5)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이익에 관한 대표적인 특약)
- 6)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7. 특수건물화재보험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하여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 특수건물 소유주가 가입 주의 다중이용업주가 가입 ⊗

1) 가입대상

- ①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 ②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국유건물 및 부속건물
-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 점포
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숙박업소 ⊗
- ⑤ 연면적 합계가 3000㎡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도매시장, 학교건물, 공장건물 주의 영화관 ⊗
- ⑥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 ⑦ 기타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건물

2) 보상범위

- ①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 ②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특수건물소유자 의무가입)
 가. 소유자 및 직계가족 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 보상
 나. 보상내용
 - 사망시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보상 주의 1인당 8,000만원 ⊗

- 부상시 상해등급(1급 ~ 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 후유장애시 등급(1 ~ 14급)에 따라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보상

- ③ 화재대물배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
- ④ 특수건물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 가.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와 수재 보상
 - 나.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8.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 사업주 가입 의무

- 1) 가입대상 : 26개 다중이용업소(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 제외)
- 2) 보상내용 : 대인(사망 1.5억/부상 3천/후유장애 1.5억),
대물(1사고당 10억)

| | |
|-----------|--|
| 음식점, 주점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 문화, 스포츠 등 |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
| 기타 업소 | ▷ 학원, 목욕장(찜질방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 |

주의 방송국 ⊗, 미술관 ⊗, 주유소 ⊗

9. 재난배상책임보험

1) 정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2) 가입대상은 20종이며 다음과 같다.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시설) |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 8.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
| 9.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차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
|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

3) 보험 가입의무자

- ①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②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③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 Ⓢ 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가입의무자는 점유자이다. ⊗

4) 보상범위

| 구분 | 내용 |
|-------|--|
| 인명 피해 | - 사망 : 1인당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부상·후유장애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부상 :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 후유장애 : 1급(1억 5천만원) ~ 14급(1천만원) |
| 재산 피해 | -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10. 풍수해보험

1) 정의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태풍, 홍수,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행정안전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의 약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성보험

2) 대상재해 및 가입대상

- ①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②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구분 | 세부 대상 |
|-------|--|
|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 상가·공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

주의 가축축사 ⊗, 16층 이상 아파트 ⊗

3) 보험료 지원

- 총 보험료의 70~92%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및 지자체에 따라 지원규모 차이 발생
-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대상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총보험료의 100% 지원 가능

II. 특종보험의 이해 (2문항)

1. 배상책임보험

⇒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1) 배상책임보험의 분류

①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가. 일반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 도급업자, 생산물

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의사, 회계사, 건축사, 변호사
(전문인은 '사' 자 기억)

② 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강제)배상책임보험

가. 의무(강제)배상책임보험 : 가스사고배상책임, 유·도선사업자, 체육시설업자, 학원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Ⅱ,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등

☞ 앞 글자로 암기 : 가·유·체·학·다·개·승·맹

주의 생산물배상책임은 의무배상책임보험이다. ⊗

③ 손해사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과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가. 손해사사고기준 : 보험기간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보험금 청구시 보상함(시설소유자관리배상, 선주배상, 경비업자배상책임보험)

주의 시설소유자관리배상은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이다. ⊗

나. 배상청구기준 :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이 청구되는 경우만 보상가능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변호사배상책임보험)

⇒ 단 특허권,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은 보상하지 않는다.

TIP '전문인은 책임기간 중 보험금 청구건만 보상한다'로 암기

주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손해사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이다. ⊗

2.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① 의무가입자 : 가스제조·판매업자, 가스용기제조업자, 일정규모 이상 가스사용재단, 가스용기운송업자는 제외

② 보상손해

가. 대인 : 사망, 후유장애, 부상시 약관 정한 금액

주의 휴업보상금을 보상한다. ⊗

나. 대물 :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생산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로 타인 손해

3)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①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②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③ 보험 의무가입대상 :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을 제외한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주의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

4)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유출에 따라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5)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 승강기 사고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6)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 동물보호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써 맹견소유자가 부담하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7) 기타 배상책임보험 **주의** 생산물배상책임 ⊗

① 영업배상책임의 특약형태 운영 종류 **주의** 단독가입 가능 ⊗

- ②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완공된 시설
- ③ 도급업자 배상책임 : 공사 중인 시설
- ④ 경비업자 배상책임
- ⑤ 주차장 배상책임
- ⑥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3. 도난보험 **TIP** 절도, 강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파손)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3)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
- 4) 망실 또는 분실 손해,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손해
- 5) 도난 손해 생긴 후 30일 이내 발견하지 못한 손해 **주의** 15일 ⊗
- 6)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 생긴 도난손해
주의 보관장소 내 ⊗

4. 레저종합보험 **TIP** '기간 : 골·수, 구간 : 낚·스로 암기

상해손해, 용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

| | 보험종목 | 내 용 |
|------|------|-----------------------------|
| 기간보험 | 골프보험 | 골프시설 구내에서 연습, 경기, 지도 중의 기간 |
| | 수렵보험 | 수렵장, 사격장 내에 있는 기간 |
| 구간보험 | 낚시보험 | 낚시 목적으로 거주지 출발 → 도착할 때까지 구간 |
| | 스키보험 | 스키 목적으로 거주지 출발 → 도착할 때까지 구간 |

⇒ 보상하는 손해 : 상해(사망, 후유장애), 용품손해, 배상책임손해

주의 용품분실손해 ⊗

5.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TIP** 재산손해 + 상해손해 + 배상책임손해

- 1) 상해담보 피보험자 : 유아교육기관의 유아원생 **주의** 유아원생 부모 ⊗
- 2) 보험사고 : 유아원 안, 밖에서의 교육활동 포함, 통상적인 경로의 등하교 중 **주의** 가정생활 중 사고도 보상한다. ⊗

- 3) 상해사고시 의료비 보상한도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자동복원제도)
단, 재산손해는 보험금지급 후 보험가입금액 감액

6. 동산종합보험

- 1) 보험가입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동산은 가입대상 가능하다.
단, 아래의 동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

보험가입 제외대상

- 수용장소가 특정 되어있는 상품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 동물, 식물
- 특정장소에 있어서의 가재 포괄계약
-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단, 리스전문업자의 리스물건은 가입가능)
 참조 공장 내 리스물건 보험대상
- 특정구간 수송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 2) 보상하는 담보위험(기본계약) **주의** 차량충돌로 인한 손해 보상 ⊗
 ⇒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잡위험
- 3) 잡위험 : 우(雨), 담수유(淡水瀰), 강설, 수해(태풍, 폭풍우, 홍수에 기인하지
 않은 것), 연기손해, 건물의 붕괴, 누수, 기타 면책제외 위험
- 4) 잡위험 보상제외 위험
 ⇒ 항공기의 추락이나 접촉, 차량의 충돌 및 접촉 등

7. 여행보험 **TP** 구간 + 기간 = 혼합보험

- 1) 보험기간 :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 2) 보장개시 :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
 주의 오후 4시부터 개시 ⊗
 ⇒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름
- 3) 보통약관 : 여행도중에 생긴 상해사고(사망, 후유장애) 보상,
 인정사망시에도 사망보험금 지급
 참조 질병사망은 특별약관으로 보상

- 4) 특별약관 : 질병사망(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한 때),
 후유장애보험금, 실손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 ※ 후유장애보험금은 80% 이상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
 - ※ 휴대품 손해는 개당, 조당, 쌍당, 회사별 한도를 적용 보상
 - 주의 휴대품 분실손해를 보상한다. ⊗
 -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기본형) 담보종목(실손보상)
 - ▷ 상해(질병) 의료비 : 해외(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국내(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상)
 - 주의 해외의료기관에 해외소재 약국을 포함하지 않는다. ⊗
 - 주의 국내여행보험의 경우에는 국내, 해외 모두 적용된다. ⊗
- 5) 특별비용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압비 주의 휴대품 구입비용 ⊗

8. 컨틴전시보험

- 1) 날씨, 온도, 경기결과, 행사 등을 전제로 예정된 사건이 현실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2) 컨틴전시보험 종류
 - 스포츠시상보험
 - 날씨보험
 - 행사취소보상보험 등
 - 주의 복권보험 ⊗

Ⅲ. 장기손해보험의 이해 (4문항)

1.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위험보장 + 저축기능)

1) 보험기간

일반손해보험(= 단기보험) : 통상 1년 이내, 장기손해보험 : 3년 이상

2) 특별계정에 의한 운용

- ① 저축보험료(위험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는 제외)는 보험업법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
- ② 특별계정 운용상품 : 개인연금(연금저축), 퇴직보험(퇴직연금), 장기손해보험 **주의** 자동차보험 ⊗
- ③ 나머지 상품은 일반계정으로 운용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대부분
예시 특별계정 운용상품이 아닌 것은? (자동차보험)

3) 환급금 지급제도

- ① 만기환급금 : 적립보험료(저축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
⇨ 만기 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혜택
주의 계약 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② 해약환급금
⇨ 계약자의 해지 의사표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 해지시까지 적립한 해약환급금 지급
⇨ 고의, 중대한 과실로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 손해발생 전은 해약환급금 지급, 손해발생 후 보험금은 지급 불가

4) 자동복원제도(장기화재보험)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 번의 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없이 잔여기간동안 보험사고 전의 보험가입금액을 동일하게 보장 받음
주의 보험가액의 90% 미만 사고발생 ⊗

5)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주기

- ⇒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납입방법 및 납입주기 선택 가능
- 선납할인제도 :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음
 - ⇒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예정이율로 할인된 보험료 적용
 - 주의 선납할인제도는 장기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도 가능하다. ⊗

6)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제도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함 ⇒ 납입최고 없이 해지시 무효
- ② 납입최고기간 :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 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주의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최고를 하게 된다. ⊗

7)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 가능
- ② 부활 시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 가능
- ③ 계약 체결시와 동일하게 고지의무 이행
- ④ 보험회사의 승인 필요
 - 주의 고지의무는 최초 신계약 체결시의 내용으로 같음한다. ⊗
 - 주의 해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한다. ⊗

8) 보험계약 대출제도(일반손해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제도 없음)

- ①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 가능 주의 만기환급금 ⊗
- ② 순수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제도가 제한될 수 있음
- ③ 보험기간 만료시 보험계약 대출기간도 함께 만료
 - ⇒ 보험계약 대출기간 연장 불가

- 9) 청약철회 :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회사는 청약철회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입보험료 전액 지급

- ①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음

주의 계약 후 1개월 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 ⊗

- ② 청약철회시 이미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계약자가 알지 못한 경우 청약철회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10) 계약취소 : 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 청약서 부분전달 / 약관 주요내용 설명) 미이행시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11) 청구권 소멸시효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 : 3년(적립금반환 청구권,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 청구권)
- ②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 2년

12) 보험료의 구성

- ①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TIP 보험료는 순,두,부
- ②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보험금지급의 재원) + 저축보험료(해약·만기환급금의 재원)
- ③ 부가보험료 = 신계약비(신계약수당) + 유지비(보험계약 유지비) + 수금비(계속보험료 수금비용)

13) 보험료 계산의 주요 요소 주의 예정이익률 ⊗

- ① 예정위험률 : 위험률차손익 = (예정위험률과 실제 손해율간의 차이)
- ② 예정사업비율 : 사업비차손익 = (예정사업비와 실제 사업비간의 차이)
- ③ 예정이율 : 이차손익 = (예정이율과 투자수익률간의 차이)

14) 계약자적립액 :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책임(보험금지급) 이행을 위해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법정 계약자적립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계약자적립액은?

- ① 보험회사 자본금
- ② 계약자적립액
- ③ 특별계정 손실보전준비금
- ④ 해약환급금

15) 계약의 무효

- ① 사기행위
- ② 보험계약 시 이미 보험사고 발생
- ③ 타인의 사망금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받지 않은 경우(단체보험 제외)
- ④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사유로 한 경우
- ⑤ 계약체결시 나이미달 or 초과

16) 계약내용의 변경

| 계약내용의 변경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종목 · 보험기간• 보험료의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상대자) 주의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17) 회사의 보장개시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18)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만기·해약환급금 : 지급사유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은 40% 적용 **주의** 예정이율 ⊗
- ② 보험금 지급 **※** 종류별로 구분
 - 신체손해보험금 : 청구서류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배상책임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된 후 7일 이내
 - 재산손해(화재)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된 후 7일 이내

19) 가지급보험금

- ① 상해·질병 등 신체손해보험
: 지급기일 초과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으면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 미리 지급
주의 추정보험금의 40% ⊗
- ② 배상책임 및 재산종합보험
: 보험금 결정전 피보험자 청구시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2. 장기화재보험

1) 일반화재 및 주택화재보험에 저축기능 추가

⇒ 보장내용은 화재보험과 동일

2) 인수제한 물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과 자동차(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전시용자동차는 제외) 및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

3. 장기종합보험(재물손해, 신체상해, 배상책임손해 포괄담보)

1) 보상하는 손해

- ① 화재손해(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 전용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 보상
- ② 도난손해(특약가입시)

2)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난손해는 특약가입시)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주의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의 중대한 과실은 보상한다. ⊗
- ② 보험의 목적물의 분실, 또는 도난
- ③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 생긴 도난
- ④ 30일 내에 알지 못한 도난

IV. 연금저축보험의 이해 (2문항)

참조 법률근거 : 소득세법

1.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요건(세액공제)

- 1) 가입대상 : 연령제한 요건 없음(성별 제한없음)
- 2)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합산)
- 3) 납입기간 : 5년 이상 **주의** 10년 이상 **⊗**
- 4) 연금수령요건 : 55세 이후 **주의** 65세 이후 **⊗**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주의** 15년 이상 **⊗**
 연간 수령한도액 이내 수령

2. 연금저축보험의 세제혜택

|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세액공제한도 | 세액공제비율 |
|-----------------------|--------|--------|
| 4천 5백만원 이하(5천 5백원 이하) | 600만원 | 16.5% |
| 4천 5백만원 초과(5천 5백원 초과) | 600만원 | 13.2% |

- ※ 퇴직연금 근로자 추가 납입액과 합산하여 적용(600만원까지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 퇴직연금에 납입한 부담금은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 ※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3.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수령 시 소득세 및 종합과세

- 1)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제외)
 - ① 70세 이전 : 5% **참조** 지방소득세 포함시 5.5%
 - ② 80세 이전 : 4%
 - ③ 80세 이후 : 3%
-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수령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선택
- 3)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 제외) 부과

4) 연간 연금수령한도 금액 산출식 :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4. 계약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수령 시(연금소득세 3~5%, 지방소득세 제외)

⇒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1) 천재지변
- 2) 계약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주의** 2개월 ⊗
- 4) 계약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5)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주의** 생활비 이용 목적으로 해지시 ⊗

V. 퇴직연금의 이해 (1문항)

1. 도입취지

- 1)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강화
- 2) 근로자의 노후생활 소득재원 확보
- 3) 근로자 퇴직일시금의 생활자금화 방지

주의 국민연금 지급금액 축소 대비 ⊗, 기업의 투자이익 창출 ⊗

2. 근거법규 및 가입대상

- 1) 근거법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 주의 조세특례제한법 ⊗

3. 퇴직연금제도 종류 주의 확정저축형 ⊗

-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회사운영,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적으로 확정 ⇨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 변동
-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근로자운영,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 부담금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 결정하는 제도 ⇨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 후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 가능
⇨ 기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로 한정되었으나
2017.7.26.부터 자영업자, 직역연금가입자 등 모든 취업자 가능

4.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주의 보험계약만 가능 ⊗, 복권기금 운용 ⊗

- 1) 적립금 운용시 자산운영 계약형태 :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만 운용
- 2) 퇴직연금 중도인출(DB형 불가능, DC형은 다음 사유에 해당시 가능)
 - ①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 ②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의료비 부담하는 경우

- ③ 중도인출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 인출순서 : 과세제외금액 → 이연 퇴직소득 → 그 밖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5. 퇴직연금보험의 세제 혜택

- 1) **세액공제 혜택**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한하여 근로자 퇴직연금 납입액을 연간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주의 연간 700만원 한도 ⊗
 (단체납입분 제외,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합산, 퇴직금 300만원 추가)
- 2)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 30% 세액경감(70% 적용)

6.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

- 1) **퇴직연금 사업자(취급회사)** : 보험사, 은행, 증권, 농·수·축협,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주의 우체국 ⊗, 저축은행 ⊗
- 2) **연금규약 작성**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주의 사업주를 통해 금융기관에 제출 ⊗
- 3) **판매자격** : 퇴직연금모집인 자격 취득
- 4) **부담금 납입**
 - ① 확정기여형 : 사외적립 수준(2022년 이후 : 100% 이상)
 - ② 확정기여형 : 100% 사외적립
- 5) **연금수급 자격** : 10년 이상 가입, 5년 이상 수령, 55세 이후 수령
 - ①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 ② 연금수급자격 미달시 : 일시금 수령

Ⅵ. 자동차보험의 이해 (5문항)

1. 자동차보험의 특성(기능)

- 1) 개인생활과 기업경영의 안정
- 2)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파탄구제
- 3) 사고예방기능(무사고자에 대해선 할인, 사고자는 할증), 산업자금조성
- 4) 보험가입자의 형사처벌 면제 및 경감
 - 주의 모든 교통사고 형사적 책임면제 통한 개인 생활 안정 도모 ⊗
- 6) 피해자 보호(보험회사로부터 보상, 의무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 등)

2. 자동차사고의 책임관계

- 1) 민사상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케 한 자는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특별법으로 피해자보호 강화(민법에 우선 적용)

※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구 분 | 민 법 | 자 배 법 |
|-----------|------------|------------------------------|
| 배상책임 주체 | 운전자, 사용자 등 | 운행자 |
| 책임형태 | 과실책임주의 |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
| 입증책임 | 피해자 | 가해자(운행자) |
| 손해배상 보장제도 | 없음 | 의무보험, 직접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등 |

○ 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다. ⊗

○ 주의 지배법은 조건부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한다. ⊗ ⇔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

○ 주의 지배법에서 배상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이다. ⊗ ⇔ 운행자 ○

○ 주의 지배법에서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 ⇔ 가해자 ○

○ 예시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의 면책요건 아닌 것은?

- ①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 ②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 ③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
- ④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

2) 형사상 책임 : 일반법(형법, 도로교통법), 특별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요내용 :

- 반의사불벌죄(가· 피해자간 형사합의시 처벌 면제)
- 보험가입특례 : 형사합의가 없어도 공소 제기할 수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2천만원 이상)
- 특례적용 제외 : 사망, 뺑소니,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 Ⓧ 주의 종합보험 가입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
- Ⓧ 주의 의무보험 가입시 형사합의가 되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
- Ⓧ 참조 생명유지에 필요한 뇌에 중대한 손상발생시 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참조 중상해는 영구적 장애를 말함 ⇨ 한시적 장애는 아니다.

②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시속 20km 초과시), 추월방법 위반,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추월운전(알코올농도 0.03% 이상),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③ '중상해' 기준

⇨ 생명에 대한 위험(사람의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 중대한 손상), 실명, 청력 잃은 경우, 하반신 마비, 불구, 불치, 난치병(※ 한시적 장애 및 거동불편은 중상해 아님)

④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 미취득,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면허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량 운행, 외국면허 취득 후 국내 또는 국제면허로 미변경 운전

3) 행정상의 책임 : 범칙금액, 면허정지, 취소처분 등

4)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회사는 전액 또는 1회 분할보험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승낙 또는 거절통지(없으면 승낙간주)
- ② 보험청약 승낙 전 발생한 사고는 청약 거절할 사유 없는 한 보상

3.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시기 및 종기)

1) 일반적일 때 :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2)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

⇒ 보험료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

3) 청약철회 : 증권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 청약철회 불가

- ① 청약일로부터 30일 경과
- ② 자배법에 따른 의무보험
- ③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주의** 1년 미만인 경우 ⊗
- ④ 전문금융소비자가 청약을 한 경우

4. 자동차 의무보험

■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배상 I +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

■ 사업용 =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1억 이상) +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

※ 사업용과 비사업용 의무금액 상이

주의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 I에만 가입하면 된다. ⊗

1) 의무보험의 특징

① 자배법 규정에 의한 가입의 강제

⇒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거절을 하지 못함

주의 고위험계층은 보험회사가 계약거절할 수 있다. ⊗

② 계약해지의 제한

⇒ 자동차 말소등록, 중복계약, 자동차양도, 천재지변, 도난 등 사유가 아니면 계약자 임의해지 제한(상속 ⊗)

③ 피해자 직접청구권 인정

④ 피해자 보호기능 강화 : 조건부 무과실주의 채택

⑤ 유한보상제

⇒ 대인대상 I : 1인에 대한 보상한도 유한, 1사고당 한도 없음

⇒ 대물배상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

2) 의무보험의 가입대상

- ① 의무가입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이륜차(50cc미만 포함)], 건설기계관리법의 9종 건설기계
- ②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 도로(도로교통법 §21호)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등

3) 의무보험의 보상한도

① 대인배상 I

| 구 분 | 사 망 | 부 상 | 후유장애 |
|-----|--------------|--------------|---------------|
| 1인당 | 1억 5천만원 (최고) | 3,000만원 (1급) | 1억 5천만원 (1급) |
| | 2,000만원 (최저) | 50만원 (14급) | 1,000만원 (14급) |

※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최고한도 = 1억 8천만원(사망 1억 5천만원 + 부상 1급 3천만원)

주의 부상 및 후유장애 사고시 최저 보상한도는 급별 한도와 상관없다. ⊗

② 대물배상 : 1사고당 2천만원

5. 보험계약의 승계

- ① 자동승계가 되지 않음, 양도인의 계약승계 요청과 보험회사의 승인으로 승계가능
- ②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의무가입 금액한도)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양수인에게 승계 간주

■ 사례별 의무보험 가입의무 참조

- 주의 외국체류중이라도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의무보험이 면제된다. ⊗
- 주의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서류로 입증한 경우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 주의 공휴일기간 중 만료된 계약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
- 주의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가족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6. 자동차종합보험(임의보험)

1) 자동차종합보험(임의보험)의 특징

- ①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초과 손해분 보상
- ②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된다.
- ③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및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특약 위반시 보상되지 않는다.
- ④ 자기차량손해 시 전손사고로 인해 차량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보상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점에서 종료된다. **주의** 자동복원제도 ⊗

2) 가입대상

- ① 개인용자동차보험 ② 업무용자동차보험 ③ 영업용자동차보험

3) 피보험자의 범위

- ① 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 ②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③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 한함
- ④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주의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경우 승낙피보험자로 본다. ⊗

- ⑤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①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 가입 **참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대인배상Ⅰ 보장한도로 보상
- ② 기명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자동차가 있는 경우
: 각각의 자동차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해를 가입하더라도 사고시 각 보험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비례적 보상

5)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① 적용대상

- 개인용/업무용 무보험차상해담보 가입자 중 다른자동차운전 담보특약 가입자
- 업무용 ⇨ 기명피보험자가 개인 / 피보험자동차는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

② 다른 자동차 범위 **주의** 2종 승합차 ⊗

- 자가용자동차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
-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등

③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주의**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

7. 이륜자동차보험

1) 보험기간 : 1년

2) 요율체계 : 회사별 보험료 차등 적용(사용용도, 배기량, 연령대별 등)

주의 사용용도, 배기량에 관계없이 보험료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3) 보상하지 않는 담보

① 자기차량손해 중 도난손해는 담보하지 않음

주의 이륜자동차보험에서는 도난손해를 보상한다. ⊗

② 가정용·업무용 이륜차자동차가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

참조 유상운송 중 사고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

4) 대인배상 I, 대물배상의 경우 가입시 자기부담금 선택 가능

8. 농기계보험

1) 가입대상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팩트 등 농기계

2) 담보종목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참조 대인배상 I, II 구분 없고, 무보험차 상해담보 없고, 의무보험 가입대상 아님

9. 자동차의 종류

1) 자배법에서 정한 자동차 정의[의무보험(대인 I, 대물)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 ①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②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9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주의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의무가입 건설기계 9종에 해당한다. ⊗

2) 차종에 따른 구분(비사업용)

TIP 차종 문제는 중형승용, 1종 승합, 2종 화물이 주로 출제됨 !!

① 승용자동차(배기량에 따라 구분, 승용 6인 이하 + 다인승 10인 이하)

- 초소형(250cc 이하) ● 소형 A(1,000cc 이하)
- 소형 B(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중형(1,600 초과 ~ 2,000cc 이하)
- 대형(2,000cc 초과)
- 다인승1종(7 ~ 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
- 다인승2종(7 ~ 10인승 비전방조종자동차)

※ 전방조종자동차 :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
⇒ 운전석과 차량 트렁크 길이를 생각하면 쉬움

● 주의 승용차에는 6인 이하 자동차만 포함된다. ⊗

● 주의 승용차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한다. ⊗

② 승합자동차(승차정원에 따라 구분)

- 1종(26인승 이상) ● 2종(17인 이상 ~ 25인 이하)
- 3종(11인 이상 ~ 16인 이하)
- 경승합(1000cc 미만, 10인 이하, 전기자동차)

③ 화물자동차(적재톤수에 따라 구분)

- 1종(5톤 초과) ● 2종(2.5톤 초과 ~ 5톤 이하)
- 3종(1톤 초과 ~ 2.5톤 이하) ● 4종(1톤 이하) 벤형/일반형

※ **진공노면청소차, 분노차, 탱크로리, 살수자동차, 청소차**는 모두 화물차다.

⇒ 덤프트럭은 9종 건설기계로 화물차 아님에 유의!

- 경화물(배기량 1000cc미만) ● 초소형(배기량 250cc이하)

④ **특정용도 자동차 : 특정한 용도로 쓰이는 차**

⇒ 이동진료차, 이동도서관차, 방송중계차, 채혈차, 소독차

TIP 청소차는 화물자동차로 특정용도 자동차가 아니다.

청소차 종류 : 살수차, 흡입세정차, 유니목 화물자동차

주의 소방차는 모두 특정용도 자동차에 해당된다. ⊗

⑤ **의무가입건설기계(9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⑥ **일반건설기계 : 무한궤도식 건설기계, 타이어식 건설기계**

⑦ **이륜자동차, 농기계(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주의 콤바인은 화물자동차에 속한다. ⊗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

- 차종구분은 용도변경에 관계없이 최초 신규 등록시 법정승차 정원 또는 적재정량에 따름
- 자동차 구조는 변경 전(최초 등록)으로 인정

주의 변경 후의 것을 따른다. ⊗

10.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산정

★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1) **기본보험료 :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주의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만을 고려하여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보험료이다. ⊗

2) **가입자특성요율 : 보험가입경력요율 (관공서, 법인체, 외국, 운전병)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주의 법인소유 자동차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이 적용된다. ⊗

3) 특별요율(대인배상¹ 제외)의 종류로는 전시용, 견인차, 수반차, 위험물적재, 기중기, 기계장치, 특수장치 등이 있다

4) 사고유무에 따른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① 단체할인·할증

- 영업용 ⇨ 1년간 평균유효대수 10대 이상
- 업무용 ⇨ 1년간 평균유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 ※ 평가대상기간 : 역년 기준 3년
 보험료 적용기간 : 평가대상기간 말일의 익년 4월 1일부터
 익익년 3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적용

② 개별할인·할증(담보종목별 구분없이 증권별로 평가 적용)

- ※ 평가대상기간 :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기간

| 보험종목 | 전계약과 갱신계약 동일조건 | |
|------------|----------------|---------------|
| 개인용 | | 피보험자 |
| 업무용, 이륜자동차 | 자가용 |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 |
| | 관용 | 피보험자동차 |
| 영업용 | |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 |

③ 사고내용별 점수

| 구분 | 사고 내용 | 점 수 | |
|----------------|------------------------------------|-----------|---------|
| 대인사고 | 사망사고 | 건당 4점 | |
| | 부상 사고 | 1급 | 건당 3점 |
| | | 2급 ~ 7급 | 건당 2점 |
| | | 8급 ~ 12급 | 건당 1점 |
| | | 13급 ~ 14급 | 건당 0.5점 |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 건당 1점 | |
| 물적사고 |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초과 | 건당 2점 | |
| |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이하 | 건당 1점 | |
| |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 건당 0.5점 | |

참조 사고점수 1점 : 부상 13급 ~ 14급, 자기신체사고, 기준초과 & 1억원 이하

참조 할증기준 200만원 설정 후 대물 120만원 자차 80만원이면? ⇒ 0.5점

- ※ 물적사고라 함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사고를 말하며 대물, 자차사고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는 대인사고와 달리 상해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건당 1점만 적용
 - 주의 자기신체사고는 대인사고처럼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

5) 특별할증 **TIP** 이륜자동차보험은 적용대상 아님

| 구 분 | 대상 계약 | 최고할증률 |
|-----------|--|-------|
| A그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장사고 야기자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된 보험료(보험가입자 특성요율 포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50.0% |
| B, C, D그룹 | 삭제 | 삭제 |
| E그룹 |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비운행요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8.7% |

6) 특약요율 **TIP** 대인배상 I 은 적용 없음(관용자동차특약 대인 I 적용)

- ① 보험료 분할납입특약
 - 약정한 납입일시로부터 30일간 납입최고 ⇨ 회사별로 다름
 - 납입최고기간 중 사고 보상, 미납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해지(30일 이내 부활 가능)
 - 대인 I, 대물(의무)과 단기계약은 반드시 일괄 납입
 - 주의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은 분할 납입할 수 없다. ⊗
- ②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 피보험자의 직계가족
 - ⇨ 사실혼 배우자 포함,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포함
 - 주의 가족이 아닌 자 : 형제 ·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등
- ③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약
 - : 해당 연령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음(사고당시 만 연령기준)

11. 자동차보험의 보상

1)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 초과분 보상)

① 사망보험금

- 장례비(장례에 소요된 비용) : 500만원
- 위자료(사망자 본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

| 구분 | 만 65세 미만인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
| 지급액 | 8,000만원 | 5,000만원 |

TIP 청구권자의 범위 : 민법상의 상속규정에 따름

- 상실수익액 : (취업가능연한 65세)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② 부상보험금

- 구조수색비 : 사회 통념상 필요 타당한 실비 인정
- 치료관계비 : 입원료, 응급치료비, 호송비, 진찰료 등
- 위자료 : 상해급수별로 1급(200만원) ~ 14급(15만원) 지급
-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 지급(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 유아, 연소자, 학생 등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주의 학생은 일용근로자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한다. ⊗

- 간병비 :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 동안 지급 **주의** 90일 한도 ⊗
- 기타 손해배상금 : 입원(1끼당 4,030원), 통원(1일 8,000원)

③ 후유장애보험금

-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 65세 미만,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 : 8천만원 × 노동능력 상실률 × 85%

- 상실수익액
 - ↳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 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가정간호비 :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

2) 대물배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 보상
 - Ⓜ 주의 자동차취급업자는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⑩
- 탑승자 및 통행자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 실손보상(분실 또는 도난 제외)

① 지급보험금

- 수리비용 : 수리비, 열처리 도장료
 - ↳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 : 사고직전 가액의 120% 한도
 - ※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차 130% 한도보상
- 시세하락 손해
 - ↳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가액의 20% 초과시 지급
 - ㉠ 출고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20%
 - ㉡ 출고 1년 초과 ~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 ㉢ 출고 2년 초과 ~ 5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 Ⓜ 참조 출고 후 1년 6개월 경과된 2천만원 차량이 사고로 수리비가 800만원 발생한 경우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될 보험금은 얼마인가?
 - ⇒ $800\text{만원} \times 15\% = 120\text{만원}$
- 대차료
 - ↳ 비사업용 자동차 대여료 지급, 대차하지 않은 경우 대차료의 35% 지급, 수리 가능 시는 25일, 수리 불가능시는 10일 인정
 - ※ 수리가 불가능하여 대체 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도 보상함
 - ※ 동급 :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
 - ※ 규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 규모

- 휴차료
 - ⇒ 사업용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파손되어 발생한 영업손해 보상
 - ⇒ 계산식 :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 × 휴차기간
 - ⇒ 30일 한도,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인정
- 영업손실
 - ⇒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손하여 휴업으로 상실된 영업손해액을 보상(30일 한도)
- 견인비용
 - ⇒ 피해물이 자력이동이 불가능하여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정비공장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 비용도 보상)

3) 자기신체사고

-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보상
- ②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사망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지급 / 부상 : 상해등급별 보험가입액 한도)
- ③ 쌍방과실사고 : 실제손해액에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지급
 - 주의 일방과실사고와 쌍방과실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은 동일하다. ⊗
- ④ 면책사항(고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 전쟁, 혁명, 내란 등으로 손해 발생시)

4) 자기차량손해

-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② 도난손해는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30일 경과 후 청구 가능 단, 일부도난(부분도난)은 보상하지 않음
 - 주의 일부 부속품만을 도난당한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 ⊗
- ③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정액형에서 정률형으로 변경
- ④ 면책사항
 - 일부 부속품만의 도난, 주정차 중일 때 타이어에만 입은 손해, 경기용, 전쟁, 혁명, 흄·마멸 등 자연소모에 의한 손해
 - 주의 홍수에 의한 차량 침수 손해 ⊗

- 전손사고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일 경우 보험계약은 사고발생 시점에서 종료(자동복원되지 않음)

5) 과실상계

- ⇒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
- ⇒ 과실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시 치료관계비, 간병비는 전액 보상(대인배상 I 의 사망보험금은 과실상계 후 2,000만원 미달시 2,000만원 보상)

6) 손익상계 : 보험사고로 이익을 받을 경우 상계

7) 동승자감액 : 동승한 유형별로 감액(승용차 함께 타기는 제외)

8) 기왕증 :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 미보상
 주의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 ⊗

9)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보상 관련('22.7.28 이후) 사고부담금

| 구 분 | 음주 | 무면허 | 뺑소니 |
|---------|----|---------|-----|
| 대인배상 I | | 전액 | |
| 대인배상 II | | 1억원 | |
| 대물(의무) | | 전액 | |
| 대물(임의) | | 5,000만원 | |

※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0) 가지급보험금 : 지급할 금액의 50% 지급

-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가지급보험금 지급하지 않음
- 주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

11) 우선지급금 : 치료비 · 위자료 전액, 휴업손해액 · 상실수익액 · 대물 배상액의 50%

1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 1) 정의 :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 받지 못할 경우(개인합이나 산재도 안 되는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보장사업과 지원사업(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

2) 보장사업 관련기관별 업무

- ① 국토교통부 : 보장사업업무 지도·감독
주의 관리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이다. ⊗
- ② 손해보험협회 :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 평가 및 교육
-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보장사업 보상업무 및 구상업무

3) 지원금액 : 보상내용과 보상금액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의 약관 지급기준이 적용됨

- ① 사망 : 최고 1억 5천만원(최저 2천만원) / 부상 : 최고 3천원 / 후유장애 : 최고 1억 5천만원
- ②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금액
 - 재활 1~4급 : 22만원
 -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 : 22만원
 - 0~18세 미만 피해가정 자녀 : 월 20만원
 - 장학금 지급 : 분기 초등 20만원 / 중학생 30만원 / 고등 40만원
 - 자립 지원금 : 유자녀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참조** 매칭지원시스템 : 유자녀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최대 7만원 공단에서 저축 지원

4) 구비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진단서 또는 검안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필요서류 ⇨ 국토교통부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청구함 **주의** 주민등록등본 ⊗

5) 보장사업 대상 :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자동차 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자동차 사고 피해자,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자('22.1.28부터)

6) 보장사업 대상 제외

- ①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 ②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③ 산재보험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 ④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⑤ 공동불법행위 사고의 경우 한쪽의 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7) 청구기간 : 보장사업 청구 가능기간 3년(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1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처리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처리 기관

- ①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 ② 법원
- ③ 금융감독원 **주의** 경찰 ⊗

참조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참고기준이고 법적 구속력 없음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해결 절차

- ① 합의 시 : 자동차사고 조사 → 보험사 과실산정 → 보험사(당사자)
과실 협의 → 분쟁 종료 및 보험금 정산
- ② 미합의 시 : 자동차사고 조사 → 보험사 과실산정 →
보험사(당사자) 과실 협의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과실 심의(불수용) → 소송(재판) → 확정

P · A · R · T

4

제3보험

01. 제3보험의 개요
02. 상해보험의 이해
03. 질병보험의 이해
04. 간병보험의 이해

I. 제3보험의 개요 (5문항)

1. 제3보험의 의미

- 1)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 +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성
- 2)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Gray Zone'이라고도 함

주의 제3보험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만을 갖는다. ⊗

2. 제3보험의 종류 (암기 : 상·질·간)

- 1)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보장하는 보험
- 2) 상해보험 · 질병보험 · 간병보험

주의 제3보험은 하나의 상품에서 상해, 질병, 간병담보를 2개 이상 복합할 수 없다. ⊗

3. 제3보험의 법령상 지위 : 보험업법

- 1) 보험업법 : 제3보험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 규정
- 2) 상법 : 인보험 영역(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사고 발생)

주의 제3보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의료급여법이다. ⊗

주의 제3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일부에 해당한다. ⊗

- 3) 보험업 경영
 - ⇨ 생명 · 손해보험의 종목 전부를 허가받은 자는 제3보험 경영 가능
 - ⇨ 생명보험 · 제3보험의 재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

주의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경영할 수 없다. ⊗

4. 제3보험계약의 특징

| 구 분 | 손해보험 | 제3보험 | 생명보험 |
|-------|---------------|----------------|--------------|
| 보험사고 | 재산상의 손해, 신체상해 | 신체의 상해, 질병, 간병 |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 |
| 피보험이익 | 존재 | 원칙적으로 없음 | |

주의 제3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 ⊗

5. 제3보험의 보상방식

- 실손보상방식과 정액보상방식 모두 가능
 - ⇒ 실손보상 : 의료비실비, 벌금담보 등
 - ⇒ 정액보상 : 사망·후유장해 담보, 진단·수술·입원일당급여 등
 - 주의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장래 소득상실분 및 위자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

6. 제3보험의 가입제한 : 원칙적으로 가입연령 제한 없음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상법)
 - ⇒ 심신박약자가 직접 보험계약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효
 - 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요건은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

7. 제3보험 상품개발기준

- 1) 보장성보험으로만 개발 가능
 - ⇒ 손해보험사가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 보험기간 15년 이내로 저축성보험 개발 가능
- 2) 제3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은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 ⇒ 계약자적립액 지급
- 3) 제3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장 부가 조건
 - ① 특약으로만 가입
 - ② 보험만기는 80세 이하
 - ③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
 - ④ 보장성보험
 - 주의 기본계약에서 질병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

II. 상해보험의 이해 (8문항)

1. 상해사고의 요건 : **우연성·외래성·급격성**

- 1) 우연성 : 원인 또는 결과가 예견되지 않는 상태
- 2) 외래성 :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
- 3) 급격성 :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

참조 지속성 ⊗, 추측성 ⊗, 내재성 ⊗

2. 상해보험의 특징

- 1)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나, 보험가액의 개념 존재하지 않음
 ⇨ 다수보험 가입으로 비례보상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비례보상
 주의 보상한도는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 2) 보험자 대위 : 인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을시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
- 3)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피보험자 동의 및 보험회사에 통지
 주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다. ⊗
- 4)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는 **중과실도 담보**
 주의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중과실에 대해 보험회사는 면책할 수 있다. ⊗

3. 상해보험의 특성

- 1) 보험료 산출 :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
 주의 보험료 산출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이력에 따라 구분한다. ⊗
- 2) 직업등급 : (위험도 및 보험료의 크기) 1급 < 2급 < 3급
 ⇨ 1급(사무직근로자), 2급(항공기정비공), 3급(영업용자동차 운전자)
 주의 보험료의 크기는 직업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
- 3) 보상하는 손해 : 신체에 입은 손해(의수, 의족 등 신체보조 장구 제외)
-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원인 불문 면책 손해
 - 피보험자·계약자·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등
 참조 천재지변(지진 포함)으로 인한 상해 보상, 전쟁·혁명 등은 면책

- ②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 모터보트, 자동차 경기, 시범, 흥행, 시운전 등
 - 참조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시 발생한 사고는 보장
 - 선박공무원, 어부 등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주의 선박승무원의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
- ③ 실손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보장 상품
 - 치과·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비타민제, 의치, 의수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악화된 부분 등

5) 보험금의 종류

- ① 정액보장
 - 사망보험금(상해의 직접결과) ○ 참조 간접결과 ⊗
 - ⇒ 실종선고 사망 : 법원에서 인정하는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 수해, 화재 등 재난 조사 후 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 기준
 - 후유장애보험금(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제외)
 - ⇒ 한시후유장애 : 한시적 장애가 5년 이상, 해당 장애지급률의 20% 지급 ○ 참조 한시52로 암기
 - ⇒ 장애지급률이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180일이 되는 날에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결정 ○ 주의 2년 ⊗
 - ⇒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액 결정
 - 주의 후유장애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직업,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는 지급하지 않음
 - ⇒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후유장애지급률 합산
 -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 적용
 - 진단·입원·수술·간병보험금 등
 - ⇒ 정액보상은 중복계약과 관계없이 보험금 중복 지급
 - ⇒ 입원급여금 :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계산

⇒ 수술급여금 : 동일한 상해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상 수술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상

② 실손보장(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 상품구조 : 기본형(상해·질병급여) + 특약(상해·질병·3대 비급여)

● 담보별 보상한도

⇒ 기본형 : 상해·질병급여 각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특약

- 상해·질병비급여 각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00회 한도)

- 3대 비급여

① 도수치료 등 :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② 주사료 : 연간 250만원(50회) 한도

③ 자기공명영상진단 : 연간 300만원 한도

주의 도수치료는 연간 100회까지 보상한다. ④

●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 기본형

-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20%

- 통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1~2만원) 중 큰 금액

참조 병·의원(1만원), 상급종합병원(2만원)

⇒ 특약

-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 통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3만원) 중 큰 금액

- 3대 비급여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3만원) 중 큰 금액

주의 입원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은 보장대상의료비의 20%이다. ④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1일 10만원 한도)

● 상해급여의료비 담보의 보상내용

①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한도 내에서 보상

② 입원치료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180일까지 보상

③ 통원치료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④ 하나의 상해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 통원 1회로 적용
- 보험료 차등적용 : **할인 · 할증요율(특별약관)**
 - :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 기준
 - ① 할증 : 특약 보험금 지급실적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
 - ⇒ 3단계(+100%), 4단계(+200%), 5단계(+300%)
 - 주의 4단계 할증구간의 할증률은 300%이다. ⊗
 - ② 할인 :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매년 산정
 - ⇒ 1단계(할인), 2단계(유지)
 - ③ 산정특례대상의 비급여의료비 및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자의 비급여의료비 제외
- 노후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 ① 노후 실손의료보험 : 65세 이상 가입 가능
 - 기본형 + 2개 특약
 - 통원과 합산하여 연간 1억원 한도 보장
 - 통원시 회당 100만원 한도 보장, 1년마다 갱신
 - 최근 3개월 약물(수면제 · 진통제) 상시복용 심사 대상
 - ②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 일부 유병력자 가입 가능
 - 기본형 **참조** 특약 없음 !!!
 - 자기부담율 : 급여 · 비급여 모두 30%
 - 통원시 외래만 보장(처방조제 미보장)
 - 최근 3개월간 약물심사와 1년간 가입심사 요건 없음
 - 주의 노후 실손은 기본형과 3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주의 유병력자 실손은 통원시 외래, 처방조제를 보장한다. ⊗
 - 주의 유병력자 실손 가입심사시 최근 1년간 검사여부를 확인한다. ⊗
- 단체실손과 개인실손간 연계제도
 - ① 개인실손 중지
 - 본인이 개인실손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계약만 가능
 - 주의 개인실손 가입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계약에 한해 중지신청이 가능하다. ⊗
 - ② 개인실손 재개
 -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중지한 개인실손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시 무심사 재개
- 기존 중지시점의 상품 또는 재개시점에 보험회사 판매 보유 중인 실손상품으로 보장 재개

주의 개인실손 중지 후 재개시에는 기존 중지된 상품으로 재개된다. ⊗

㉔ 단체실손의 개인실손으로 전환

-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
- 전환신청 직전 5년간 단체실손 가입자중 개인실손 가입이 가능한 자(65세 이하)
-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 + 10대 중대질환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 전환

주의 개인실손 전환시 치료이력과 무관하게 무심사로 전환된다. ⊗

4. 보험금의 지급

- 1)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2)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3영업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보험금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 3)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할 경우
 ⇨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5. 교통상해

- 1)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와
 지배법상 9종 건설기계 참조 작업기계로 사용시 자동차 아님!!!
- 2) 기타 교통수단 : 기차, 전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쿠터, 항공기, 선박 등과 9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참조 작업기계로 사용시 기타 교통수단 아님!!!
- 3) 교통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연습)을 위해 운행 중에 발생한 손해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
 - ③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④ 자동차 등 설치·수선·정비 등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등

6. 휴일(주말) 교통상해

- 1) 휴일 :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주의 피보험자의 휴가기간도 휴일에 해당한다. ⊗
- 2) 보험책임의 시기는 사고발생지의 표준시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휴일의 0시이며, 보험책임의 종기는 보험책임 시기일의 24시까지

7.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상해

- 1)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운전 제외),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손해 보상
주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
- 2) 대중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등
참조 전세버스,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

8. 뺑소나·무보험차 상해보험

- 1) 뺑소나·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보상
참조 신체보조장구 제외 But 신체에 이식된 인공장기 등은 포함
- 2)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3)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모두 무보험자동차일 경우 보상

9. 단체상해보험 **참조** 1급, 2법, 3규 로 암기 !!!

- 1) 단체의 종류 : 1종(급여단체), 2종(법정단체, 비영리법인단체), 3종(규약단체)
주의 비영리법인단체는 3종단체에 해당한다. ⊗
- 2)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 및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 변경
- 3)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 생략 가능
주의 단체상해보험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계약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Ⅲ. 질병보험의 이해 (3문항)

1. 질병보험의 의의

- 1)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 보장
- 2) 질병 : 신체 내재적 원인에 의해 신체에 일시적 또는 계속적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주의) 질병보험에서도 상해보험과 같이 외래성이 인정된다. ⊗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1) 통계청에서는 WHO의 권고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하고 있음
주의) 금융위원회 ⊗, 보건복지부 ⊗, WHO와 무관하게 ⊗
- 2)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2021년 1월 1일 시행)

3. 질병사망보험의 특수성

- 1) 특별약관으로만 운영 가능
주의) 질병사망보장은 기본계약으로 가능하다. ⊗
- 2)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질병사망보장 특약의 조건
 - ① 보험만기는 80세 이하
 - ②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
 - ③ 보장성 보험(만기시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 이내)
- 3) 질병사망보험의 무효사유
 - ① 질병사망 보험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참조)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효
 - 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참조) 단체보험계약은 제외
 - ③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주의)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보험사고가 확정된 경우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4. 질병보험의 종류

- 1) 정액보장 : 질병사망 · 후유장애 · 진단비 · 입원비 · 수술비 등
- 2) 실손보장 : 실손의료비(입원, 통원)

5. 보험나이의 계산

1)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

⇒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

참조 보험나이 계산 예시

① 보험계약일 : 2021.10.1.

② 피보험자 생년월일 : 1977.6.1.

(풀이) 2021.10.1. - 1977.6.1. = 44.4(6개월 미만) ⇒ 44세

⇒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 증가**

주의 보험나이는 매년 1월 1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

2) 계산착오로 피보험자의 연령이 잘못 계산된 경우 보험료 변경시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

3) 보험료 산정 : **질병보험(연령별 차이)** vs **상해보험(직업·직무상 차이)**

6. 대기기간(Waiting Period) 설정

1) 대기기간 : 특정 질병의 경우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보장하지 아니하는 기간 ⇒ **역선택 방지 목적**

2) 암담보 특약에서는 대기기간 중 암진단이 확정된 경우 특약은 무효

3) 대기기간 미설정 :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과 15세 미만자

주의 대기기간 중 암진단이 확정되면 대기기간 종료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

7.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1)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사망, 장애, 입원, 통원, 요양, 수술, 수발이 필요한 때 보상

2)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추가 진단,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이후에는 보장

8. 질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상품마다 일부 차이)

1) 피보험자·계약자·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악화된 부분

- 3) 정신 및 행동장애
-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5) 선천성 뇌질환
 - ▶참조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보상
- 6)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7)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8)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9)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10)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등

주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한다. ⊗

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참조 상해보험과 동일!!

- 1) 정액보장 : 사망·후유장애·진단·입원·수술·간병보험금 등
- 2) 실손보장 : 실손의료보험(4세대)

10. 보험료 차등적용 : ▶참조 상해보험과 동일!!

11. 노후·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 ▶참조 상해보험과 동일!!

12. 보험금의 지급 : ▶참조 상해보험과 동일!!

13. 암보험

- 1)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등을 보장하는 보험
 - 2) 암보험금(정액)의 종류
 - ① 암진단급여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통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② 암입원급여금 :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 지급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 ↳ 회당 최고한도일 기준으로 계속 보상 주의 90일 ⊗
 - ※ 지급예외 : 합병증의 치료 및 요양목적의 입원
- 주의 암수술로 인한 전신허약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합병증의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상한다. ⊗

- ③ 암수술급여금
 - 암으로 진단 확정 → 치료목적으로 수술 → 수술급여금 지급
- ④ 암사망보험금
 - 암으로 진단 확정 → 암 직접원인으로 사망 or 80% 이상 장애상태 → 암사망보험금 지급
 -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외
 - 주의 암으로 인해 50% 이상 장애상태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⑧

14. 치명적 질병보험(C보험)

- 1)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 2) 중대한 질병 진단, 수술 or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발생시 보상
 - 주의 중대한 화상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⑧
- 3) 잔여수명이 6개월 이하의 치명적 질병 발생시
 - ⇒ 사망보험금의 50% 선지급 + 향후 보험료 납입 면제
 - 주의 사망보험금 전액 ⑧

15. 어린이보험

- 1)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
- 2) 가입연령 : 0세 ~ 15세 주의 0세~18세 ⑧
- 3) 태아도 보험가입 가능(태아가입 특별약관)
 - ⇒ 출생 전 태아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불가능함
 - 주의 법인격이 있다. ⑧, 피보험자가 가능하다. ⑧
 - ⇒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보험계약 체결
 - 주의 임신 사실을 알기 전 ⑧

16. 치아보험

- 1) 충치, 잇몸질환 등의 질병(또는 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보장하는 보험
 - ① 보존치료 : 충전, 크라운 주의 임플란트는 보존치료에 해당한다. ⑧
 - ② 보철치료 :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 2) 가입연령 : 0세 ~ 75세 **주의** 0세~70세 ⊗
- 3)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 운영**
주의 질병치료에 대해 감액기간은 운영하나 면책기간은 적용하지 못한다. ⊗
- 4)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음
⇒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 조정
주의 치아보험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조정되는 갱신형이 있는데
보험료 갱신은 전체 보험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IV. 간병보험의 이해 (1문항)

1. 장기간병보험의 의의

- 1)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 일상생활 장애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지급
- 2) 장기간병보험 or 장기요양보험 명칭 통합
⇒ 미국은 LTC보험, 일본은 개호보험
참조 중증치매상태로 항상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은? 간병보험 (간병보험 자체를 물어보는 질문도 종종 출제됨)

2.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성

- 1)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
- 2) **노인질병 증가**로 노인 장기간병 의료비 부담 증가
- 3) 가족을 통한 장기간병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 증가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간병보험 수요 증가
주의 보험범죄 발생증가 (X), 노인의료 서비스의 선진화 (X)

3.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장기요양급여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주의 금융감독원 (X), 5~6등급 (X)
-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점수**
 - ① 1등급 : 95점 이상
 - ②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③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④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⑤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⑥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 45점 미만

2) 치매간병비

- ①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 일정 기간(90일) 이상 중증치매상태 계속 ⇨ 치매간병비 지급(일시지급형, 매월지급형)
 - 주의 치매상태로 확정된 경우 간병비용은 연금의 형태로만 받을 수 있다. ⊗
- ② 중증치매상태 : 치매진단확정 + 인지기능 장애
 - ⇨ 중증치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or CDR척도 3~5점
- ③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도 5년 동안 추가진단,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5년이 지난 후에는 보장

4. 간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참조 단, 이런 경우 보상!!
 - ⇨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 복용
- 5)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5.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 1)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
 - 주의 치매발생 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
 - 주의 대리청구인 지정 시기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로 정한다. ⊗
- 2)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가능
 -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3) 본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 가능
 - 주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동일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